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Review and Suggestion on SME Size Standard

기본연구 14-1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
신상철

 KSBI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신상철 선임연구위원

발 간 사

중소기업은 한 국가의 경제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혁신의 주체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하여 중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발전 경로에서 건강한 경제를 형성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 관점에서 기업을 크기로 정의하는 주된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있다. 규모 관점에서의 기업의 정의와 그 구성 요소는 국가가 생산하는 통계 자료의 표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의 구조 및 그 변화를 측정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이 인식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비하여 자주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처음 구분한 1982년 이후, 기본적으로 1995년에 변경된 기준인 근로자수 기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하고,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편전에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양적 기준을 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등 복수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매출액을 양적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하위 기준으로서 소기업 범위기준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기업 범위기준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소기업 범위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경제총조사 및 기업생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기업의 산업별 규모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소기업 범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신상철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조언해 준 원내·외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기획에서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중소기업청 유동준 사무관과 자료 작업에 함께 힘써준 김종길 주무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정소형 연구조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소기업 경제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고, 관련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 세 중

[Redacted content]

요 약

[Redacted content]



제1장 서론

□ 소기업 범위 설정의 경제적 의미

- 국가 기초 통계자료 구축
 - 중소기업의 정의와 그 구성 요소는 통계 데이터의 표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인식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침
- 국가 정책 대상의 확정
 - 다양한 재정 또는 비재정 직원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한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확정
- 과세 상한 대상을 정함
 - 과세 부담의 상환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의 상한을 규정
- 관련 법·규정 또는 행정 부담의 상한
 - 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기업 규모 상한
- 정책 수단의 넓은 범위를 대상 확정
 - 혁신성, 민첩성, 창의성 등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의 대상을 확정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및 한계점

- '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따라 소기업 범위도 재조정 검토가 필요
- 소기업 경제의 특성 분석 필요성 증대 및 분석 기반 확대
 - 최근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2013) 신설 등 소기업 분류의 의미가 증가하고 있음
- 관계 법령간 소기업 범위가 불일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간 조화를 도모할 필요
 - 향후 소기업 범위기준이 설정되면 조화를 도모할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에 따른 후속 연구로서 개편된 범위기준에 의한 소기업 범위기준의 확정 방안을 모색함
- 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 방향 및 개편안을 마련

□ 연구방법

- 통계청(기업생멸통계, 경제총조사) 및 기업DB 분석(NICE 등)을 통한 업종별 소기업 현황 파악
- 분류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분류기준 도출
- 해외 선진국의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사례를 비교·분석

제2장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개요

□ 현행 기업규모 분류체계

- 현재 중소기업의 규모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기업을 규모 관점에서 구분하면 중소기업기본법 등 4개 법률에 의해 5개 단위로 기업규모가 분류되고 있으며 각 대상별로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5개 단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임
 - 하지만 5개 단위는 근거법이 서로 상이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특정한 정책 목적에 의한 분류이므로 순수 기업규모에 의한 분류 정의에는 적합지 않은 측면도 있음

□ 현행 소기업규모 분류체계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은 근로자수 50명, 10명 미만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표 2> 업종별 소기업 범위기준

범위기준	업종
근로자 50명 미만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운수업 ⑤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⑦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⑧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근로자 10명 미만	①농·림·어업 ②하수 폐기물처리업 ③금융 보험업 ④전기 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 교육서비스업 ⑧예술·스포츠·여가사업 ⑨숙박·음식업 ⑩부동산·임대업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의 한계

○ 기준간의 불일치

- '15년부터 대·중소기업 구분은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하위 분류인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소기업 범위 판단의 중요성 증가

- 소기업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13년), 규모별 경쟁제도('09년) 등 소기업·소상공인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소기업 범위기준 편차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은 근로자수 50명과 10명으로 양분되어 있어 업종별로 소기업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범위기준 내 산업별 편차로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규모 판단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표 3> 현행 기준의 업종별 소기업 분포

업종	중기업 수	소기업 수	비율	범위기준
A 농업·임업 및 어업	314	214	40.5%	10명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125	1,520	41.7%	10명
K 금융·보험업	1,032	1,017	49.6%	10명
S 개인서비스업	7,227	7,336	50.4%	10명
R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1,161	1,212	51.1%	10명
D 전기·가스·수도사업	51	61	54.5%	10명
P 교육서비스업	2,402	3,444	58.9%	10명
L 부동산·임대업	3,116	6,202	66.6%	10명
G 도·소매업	26,040	53,430	67.2%	10명
H 운수업	2,319	5,357	69.8%	50명
I 숙박·음식점업	6,003	12,444	67.5%	10명
N 사업서비스업	3,741	11,912	76.1%	50명
C 제조업	11,399	61,225	84.3%	50명
J 출판·영상·정보서비스	1,329	13,426	91.0%	50명
B 광업	24	352	93.6%	50명
F 건설업	1,319	20,676	94.0%	50명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81	28,300	95.0%	50명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31	32,756	95.0%	50명
전체	72,814	260,884	78.2%	

기초자료 : 기업생멸통계

- 범위기준이 2개로 되어 있어 업종간 소기업 분포에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있음
 - 범위기준이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 업종간 소기업 비중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업종간 불균형 지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 소기업 범위기준이 50명 미만인 업종의 소기업비중 평균은 87%, 10명 미만인 업종은 평균 54%로 나타남
 - 또한 같은 범주내에서도 업종별로 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10명 범주내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은 67.5%, 농/임/어업은 40.5%를 나타냈으며, 50명 범주내에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95%, 운수업은 69.8%를 나타냄
-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 성장하지 않고 소기업에 머물기 위해 기준 이상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성장하는 기업이 소기업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증가한 기업 중 2012년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중기업)에서 50인 미만(소기업)으로 감소한 기업이 315개로 나타남

<표 4> 성장 기업의 소기업화

	2012년	매출액 20% 증가				전체
		X		○		
		직원 수 변동		직원 수 변동		
		X	○	X	○	
중기업	중기업	6,944	0	1,661	0	8,605
	소기업	0	2,338	0	315	2,653

기초자료 : NICE DB

- EU에서는 소기업을 앞에서 언급한 MIGA, IFC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를 5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과 자산은 1천만 유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하고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소기업으로 분류함

제4장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및 개편안

1.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 기본방향
 -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산출(output)로 기업을 분류하는 중 소기업 범위 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을 반영
 - 가급적 현재 업종별 소기업 비중 유지
 -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및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분석하고, NICE(주)등의 자료를 보조 통계 자료로 활용
 -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되, 업종 간 비중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
 - 이와 같은 방법은 기준의 변경에 의한 이해관계자들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시에도 반영된 바 있음

○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개편안)

- 현행 근로자 기준을 삭제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여 소기업 범위를 정함
- 중소기업 범위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매출액 기준을 적용
- 업종별 시뮬레이션 결과 '15년 시행 예정인 업종별 구분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소기업 비중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세법의 졸업기준(매출액 1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업종별로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2.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 매출액 크기에 따라 표준 산업분류 18업종(대분류)을 5그룹(100/70/40/20/10억원)으로 분류

□ 업종별 적용 기준

- Group 1 :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 전기·가스·수도사업 1개업종
- Group 2 : 3년 평균 매출액 70억원 적용
 -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7개 업종
- Group 3 : 3년 평균 매출액 40억원 적용
 -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2개 업종

- Group 4 :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적용
 - 출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지원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Group 5 :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적용
 - 숙박·음식, 교육,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등 4개 업종

<표 5>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개편 (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미만)
100 억원	전기·가스·수도	상시근로자 10명
70 억원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10명
40 억원	하수·폐기물처리·환경, 부동산·임대업	상시근로자 10명
20 억원	출판·영상·정보·통신, 시설관리·사업지원	상시근로자 5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명
10 억원	보건·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숙박·음식, 교육,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상시근로자 10명

- 범위기준 변경으로 인한 소기업 분포 변화
 -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소기업 포함 입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종래의 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

<표 6>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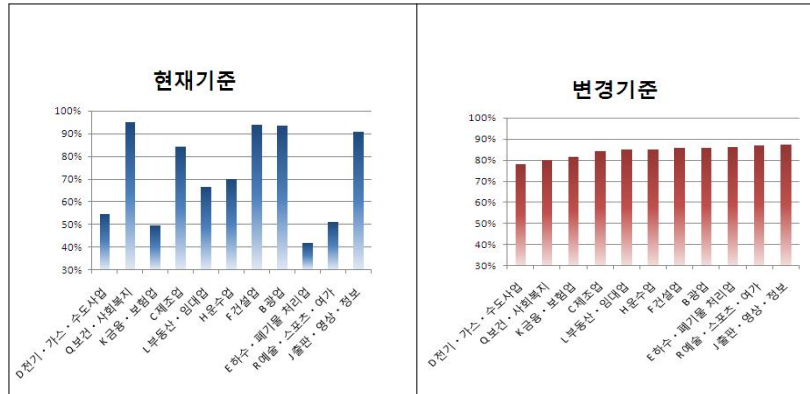
개편 (매출액)	업종		Net 소기업 변경효과 -1,604
100 억원	증가기업	67	67
	감소기업	-	
70 억원	증가기업	11,030	2,442
	감소기업	-8,588	
40 억원	증가기업	2,795	2,795
	감소기업	-	
20 억원	증가기업	581	-5,941
	감소기업	-6,522	
10 억원	증가기업	4,171	-967
	감소기업	-5,138	

□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효과

○ 정책 수요자 측면

- 소기업 유지를 위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 인위적인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 수를 정제시키는 등 경영 의사결정의 왜곡을 제한
 - 성장 촉진 및 고용/투자 확대의 걸림돌 제거
- 업종별 소기업 비중 편차를 해소
 - 불합리하게 소기업 지원에서 배제 되었던 일부 업종도 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어 불합리 시정
 - 업종 간 소기업 비중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정책수립 가능

<업종별 소기업 비중 변화>



○ 정책 공급자 측면

- 정책의 '선택'과 '집중' 효과를 배가
 - 소기업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되고,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매출액 기준은 실질적으로 소기업에 정책을 집중화 할 수 있게 됨
- 고용 유지 및 확대에 대한 결림돌 제거
 - 근로자 수 기준은 매출액 기준에 비하여 소기업 기준 유지가 용이
 -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고려 사항

-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정할 필요
 - 기업범위기준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범위기준 변경에 의한 충격 완화
 - 유예기간 또는 경과기간을 두어 기업 범위기준 변경으로 기업의 예상치 못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대비

-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업규모 변화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 ‘소기업범위위원회(가칭)’ 등을 가동하여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점검하고 범위기준에 반영할 필요

차 례

제1장 서 론	1
---------------	---

제2장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개요

1. 현행(2014년) 소기업 범위기준	4
2. 소기업 정의 변천 연혁	7
(1) 중소기업기본법	7
(2) 조세특례제한법	11
3.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의 한계	19

제3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 소기업 범위기준

1. 해외 소기업 정의	23
2. 미국의 기업 범위기준 개편 연혁	27

제4장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및 개편안

1.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32
2.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34

[부록1] 소기업범위 시뮬레이션

- I. 분석개요 40
- II. 분석결과 42

[부록2] 소기업관련 국내·외 지원정책

1. 소기업 관련 국내 지원 시책 136
2. 주요국 소기업 지원 시책 137

[부록3]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비교연표 151

<참고문헌> 161

표차 례

<표 차례>

<표 1> 현행 기업규모 관련 범규정	4
<표 2> 업종별 소기업 범위기준	5
<표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연혁	9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	14
<표 5> 현행 기준의 업종별 소기업 분포	20
<표 6> 업종별 소기업 비중 편차	21
<표 7> 성장 기업의 소기업화	22
<표 8> 국제기구 및 해외의 소기업 정의	25
<표 9> 미국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발의안 주요 내용	31
<표 10>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35
<표 11> 소기업 범위기준 변동 내역	36
<표 12>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	37

[부록 1]

(1) 경제총조사

<부표 1- 1> 현행(2014년) 기준 대·중소기업 분포현황	42
<부표 1- 2> 현행(2014년) 기준 중·소기업 분포현황	45
<부표 1- 3> 현행(2014년) 업종별 대·중소 기업	46
<부표 1- 4> 개편안 마련 매출액 절사점	48
<부표 1- 5> [신기준 1] 매출액 규모별 범주	50
<부표 1- 6> [신기준 2] 매출액 규모별 범주	52

<부표 1- 7> [신기준 0] 업종별 중·소기업 분포현황	54
<부표 1- 8> [신기준 0]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	56
<부표 1- 9> [신기준 0]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58
<부표 1- 10> [신기준 1] 업종별 중·소기업 분포현황	60
<부표 1- 11> [신기준 1]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	62
<부표 1- 12> [신기준 1]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	64
<부표 1- 13> [신기준 2] 업종별 대·중소기업 분포현황	66
<부표 1- 14> [신기준 2]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	68
<부표 1- 15> [신기준 2]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70
<부표 1- 16> [신기준 1] 기준변경 순효과	72
<부표 1- 17> [신기준 2] 기준변경 순효과	74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부표 1- 18> A. 농업, 임업 및 어업	76
<부표 1- 19> B. 광업	76
<부표 1- 20> C. 제조업	77
<부표 1- 21> C10 식료품	77
<부표 1- 22> C11 음료	78
<부표 1- 23> C12 담배	78
<부표 1- 24>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78
<부표 1- 25>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79
<부표 1- 26> C15 가죽, 가방, 신발	79
<부표 1- 27> C16 목재, 나무제품; 가구제품	80
<부표 1- 28>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80
<부표 1- 29>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81
<부표 1- 30>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81
<부표 1- 31>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82
<부표 1- 32>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82
<부표 1- 33>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83
<부표 1- 34> C23 비금속광물제품	83
<부표 1- 35> C24 1차금속	84
<부표 1- 36> C25 금속가공제품;	84

<부표 1- 37>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85
<부표 1- 38>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85
<부표 1- 39> C28 전기장비	86
<부표 1- 40> C29 기타기계 장비	86
<부표 1- 41> C30 자동차,트레일러	87
<부표 1- 42> C31 기타운송장비	87
<부표 1- 43> C32 가구	88
<부표 1- 44> C33 기타제품	88
<부표 1- 45> D.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89
<부표 1- 46> E. 하수 · 폐기물처리업	89
<부표 1- 47> F. 건설업	90
<부표 1- 48> G. 도 · 소매업	90
<부표 1- 49> H. 운수업	91
<부표 1- 50> I. 숙박 · 음식점업	91
<부표 1- 51> J. 출판 · 영상 · 정보	92
<부표 1- 52> K. 금융 · 보험업	92
<부표 1- 53> L. 부동산 · 임대업	93
<부표 1- 54> M. 전문 · 과학 · 기술	93
<부표 1- 55> N. 사업서비스업	94
<부표 1- 56> O. 교육서비스업	94
<부표 1- 57> P. 보건 · 사회복지	95
<부표 1- 58> Q. 예술 · 스포츠 · 여가	95
<부표 1- 59> R. 개인서비스업	96

(2) 기업 생멸통계

<부표 2- 1>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97
<부표 2- 2> 소기업 업종별 적용기준	99
<부표 2- 3>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 (5 범주)	99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부표 2- 4> B. 광업	100
<부표 2- 5> C. 제조업	100
<부표 2- 6> C10 식료품	101
<부표 2- 7> C11 음료	101
<부표 2- 8> C12 담배	102
<부표 2- 9>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102
<부표 2- 10>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102
<부표 2- 11> C15 가죽, 가방, 신발	103
<부표 2- 12> C16 목재, 나무제품; 가구제품	103
<부표 2- 13>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04
<부표 2- 1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4
<부표 2- 15>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05
<부표 2- 16>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105
<부표 2- 17>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106
<부표 2- 18>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06
<부표 2- 19> C23 비금속광물제품	107
<부표 2- 20> C24 1차금속	107
<부표 2- 21> C25 금속가공제품	108
<부표 2- 2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108
<부표 2- 2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09
<부표 2- 24> C28 전기, 장비	109
<부표 2- 25> C29 기타기계 장비	110
<부표 2- 26> C30 자동차, 트레일러	110
<부표 2- 27> C31 기타 운송장비	111
<부표 2- 28> C32 가구	111

<부표 2- 29> C33 기타제품	112
<부표 2- 30> D. 전기·가스·수도사업	112
<부표 2- 31>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13
<부표 2- 32> F. 건설업	113
<부표 2- 33> G. 도·소매업	114
<부표 2- 34> H. 운수업	114
<부표 2- 35> I. 숙박·음식점업	115
<부표 2- 36> J. 출판·영상·정보	115
<부표 2- 37> K. 금융·보험업	116
<부표 2- 38> L. 부동산·임대업	116
<부표 2- 39> M. 전문·과학·기술	117
<부표 2- 40> N. 사업서비스업	117
<부표 2- 41> O. 교육서비스업	118
<부표 2- 42> P. 보건·사회복지	118
<부표 2- 43> Q. 예술·스포츠·여가	119
<부표 2- 44> R. 개인서비스업	119

(3) 소기업 업종별 근로자 분포

<부표 3-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0
<부표 3- 2> B. 광업	120
<부표 3- 3> C10 식료품	120
<부표 3- 4> C11 음료	121
<부표 3- 5> C12 담배	121
<부표 3- 6>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121
<부표 3- 7>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121
<부표 3- 8> C15 가죽, 가방, 신발	122
<부표 3- 9> C16 목재, 나무제품, 가구제품	122
<부표 3- 10>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22
<부표 3- 11>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2
<부표 3- 12>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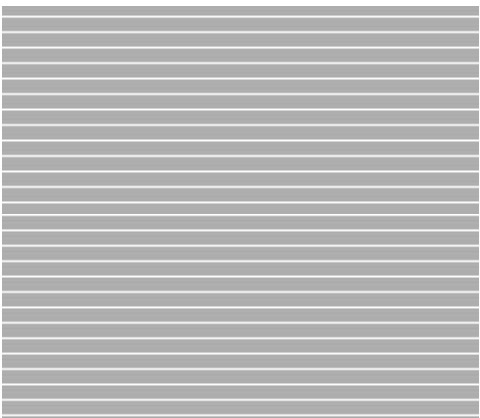
<부표 3- 13>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123
<부표 3- 14>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123
<부표 3- 15>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24
<부표 3- 16> C23 비금속광물제품	124
<부표 3- 17> C24 1 차금속	124
<부표 3- 18> C25 금속가공제품;	125
<부표 3- 1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125
<부표 3- 2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25
<부표 3- 21> C28 전기장비	126
<부표 3- 22> C29 기타기계 장비	126
<부표 3- 23> C30 자동차, 트레일러	126
<부표 3- 24> C31 기타운송장비	127
<부표 3- 25> C32 가구	127
<부표 3- 26> C33 기타제품	127
<부표 3- 27> D.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128
<부표 3- 28> E. 하수 · 폐기물처리업	128
<부표 3- 29> F. 건설업	128
<부표 3- 30> G. 도 · 소매업	129
<부표 3- 31> H. 운수업	129
<부표 3- 32> I. 숙박 · 음식점업	129
<부표 3- 33> J. 출판 · 영상 · 정보	130
<부표 3- 34> K. 금융 · 보험업	130
<부표 3- 35> L. 부동산 · 임대업	130
<부표 3- 36> M. 전문 · 과학 · 기술	131
<부표 3- 37> N. 사업서비스업	131
<부표 3- 38> O. 교육서비스업	131
<부표 3- 39> P. 보건 · 사회복지	132
<부표 3- 40> Q. 예술 · 스포츠 · 여가	132
<부표 3- 41> R. 개인서비스업	132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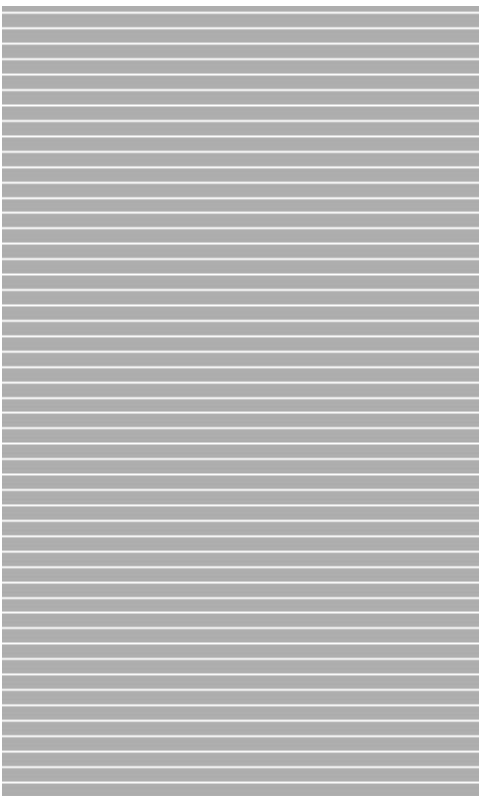
<부표 4- 1> 현행(2014년) 업종별 대·중소 기업 범위기준	133
<부표 4- 2> 현행(2014년) 업종별 소기업 범위기준	134
<부표 4- 3> 개편안(2015년) 업종별 대·중소기업 범위기준 ..	135

[부록 3]

<표 5- 1>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비교 연표	151
<표 5- 2> 중소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범위	160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I

서론

□ 소기업 범위 설정의 경제적 의미

- 국가 기초 통계자료 구축
 - 중소기업의 정의와 그 구성 요소는 통계 데이터의 표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인식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침
 -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의 가용성은 중소기업 부문에 관련된 정책 개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분야의 구조 및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에 관한 정책의 넓은 범위 결정의 기반이 됨
- 국가 정책 대상의 확정
 - 다양한 재정 또는 비재정 직원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한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확정
 - 중소기업 부문에 관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 착수 등
 -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R&D 지원 교육 등
- 과세 상한 대상을 정함
 - 과세 부담의 상환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의 상한을 규정

- 관련 법·규정 또는 행정 부담의 상한
 - 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기업 규모 상한
 - 예 : 특정한 규제 준수 의무, 완전한 통계 자료의 보고 의무, 재무 자료의 보고 의무, 종업원에 대한 특정한 의무 등
- 정책 수단의 넓은 범위를 대상 확정
 - 혁신성, 민첩성, 창의성 등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의 대상을 확정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및 한계점

- '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따라 소기업 범위도 재조정 검토가 필요
- 소기업 경제의 특성 분석 필요성 증대 및 분석 기반 확대
 - 최근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2013) 신설 등 소기업 분류의 의미가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소기업 범위는 '82년 20명 이하에서 '95년 이후 50명 이하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조정없이 지속되고 있음
- 관계 법령간 소기업 범위가 불일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간 조화를 도모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은 제조업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 향후 소기업 범위기준이 설정되면 조화를 도모할 필요

□ 연구 목적

- 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기준 또는 매출액·근로자 수 합동기준 등으로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방안 마련
 -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재검토
- 본 연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에 따른 후속 연구로서 개편된 범위기준에 의한 소기업 범위기준의 확정 방안을 모색함
- 소기업 범위기준의 개편 방향 및 개편안을 마련

□ 연구방법

- 통계청(기업생멸통계, 경제총조사) 및 기업DB 분석(NICE 등)을 통한 업종별 소기업 분포 현황 파악
- 분류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분류기준 도출
- 해외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사례를 비교 분석

II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개요

1.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 현행 기업규모 분류체계

- 현재 중소기업의 규모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기업을 규모 관점에서 구분하면 중소기업기본법 등 4개 법률에 의해 5개 단위로 기업 규모가 분류되고 있으며 각 대상별로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5개 단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임
 - 하지만 5개 단위는 근거법이 서로 상이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특정한 정책 목적에 의한 분류이므로 순수 기업규모에 의한 분류 정의에는 적합지 않은 측면도 있음

<표 1> 현행(2014년) 기업규모 관련 법규정

구분	근거법률	정의	현황('12년)
상호출자제한	공정거래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1,791개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중소기업 졸업 기업	2,505개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9.3만개
소기업	중소기업법	근로자 기준 미만 (예: 제조업 50명)	34.0만개
소상공인	소상공인법	근로자 기준 미만 (예: 제조업 10명)	291.8만개

기초자료 : 중소기업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어 '15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는 종래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 근로자,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매출액 크기 및 업종에 따라 5개 범주로 재편되었음
- 현행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의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은 투입(input) 지표인 '근로자 수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행 소기업규모 분류체계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은 근로자수 50명, 10명 미만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표 2> 업종별 소기업 범위기준

범위기준	업종
근로자 50명 미만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운수업 ⑤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⑦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⑧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근로자 10명 미만	①농·림·어업 ②하수·폐기물처리업 ③금융·보험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교육서비스업 ⑧예술·스포츠·여가사업 ⑨숙박·음식업 ⑩부동산·임대업

-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업종은 다음과 같음
 - 도매·소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농·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2. 소기업 정의 변천 연혁

(1) 중소기업기본법

2.1.1 개요

○ 1982년

- 시행령에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근거를 둠
-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 유예근거를 두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함

○ 1995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①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 ②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 2000년

- 기존 ①의 적용 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추가되었고, 상시근로자수의 범위도 5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변경
- 또한, 기존에는 ②와 ③으로 구분되었던 조항이 제①호 외의 업종으로 통합 되었으며, 10인 '이하'에서 10인 '미만'으로 변경(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신설되었고, 종전의 제3조(중소기업의 구분) <1995 신설>의 내용이 (중소기업의 범위)로 변경되었음)

○ 2002년

- 이전에 운수업이었던 명칭이 운송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에는 50'인'이 50'명'으로, 10'인'이 10'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2011년

- 기존의 적용 대상 업종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고, 내용 중 '사업'이라는 명칭이 '업종'으로 변경되었음

2.1.2 규정 연혁

<표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연혁

연도	내용	
	종전	개편
1995		제3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2000	제3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삭제>
	<신설>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002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생략)	1.운수업 → 운송업 2.(현행과 같음)
2007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중략)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후략). 1. (전략)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후략). 2. 제1호 외 (중략)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후략)
2011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전략) 업종 (후략)

기초자료 : 법제처

(2) 조세특례제한법

2.2.1 개요

- 2000년 이전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설비, 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조세특례 시행
- 2000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설
 - 중소기업 전반에 조세특례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적용 대상 업종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이었음
 - 상시근로자 기준 종업원 수는 제조업의 경우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으로 규정되었음
- 2001년
 - 적용 대상 업종에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주로 여객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이 추가되었음
 -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 업종에 물류산업도 추가되었음
- 2003년
 - 적용 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이 추가

- 기존에 '부가통신업', '방송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었던 명칭이 '전기통신업(유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등 추가)',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프로그램 공급업, 중계유선방송업 등 추가)'으로 변경되었고, 의료업에서는 개인의원이 제외되었음

○ 2006년

- 적용 대상 업종에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노처리, 토양정화업이 추가되었음

○ 2008년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 작성업이 추가되었음

○ 2009년

- 2월부터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 업종에 출판업도 포함되었음
- 매출액 100 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소기업 졸업기준'이 신설되었음
- 4월에는 축산업 또한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음

○ 2010년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이 각각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음

○ 2014년

- 적용 대상 업종에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도 추가되었음
- 작물 재배업, 어업 또한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음

2.2.2 규정 연혁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

연도	내용	
	종전	개편
2000	<신설>	□ 대상 업종 : 7개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 적용시한 : 2003. 12. 31. ○ 중복적용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가능
2001	□ 대상 업종 : 7개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 추가업종 ○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 처리업, 폐수 처리업 ○ 감면내용 - 수도권내 소기업 : 2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지방 중소기업 :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 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 종업원 100인 미만 -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종업원 50인 미만 - 기타업종 : 종업원 10인 미만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200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 19개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부가통신업 - 방송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 의료업 ○ 감면내용 - 수도권소기업(지식기반 중기업) : 20% - 지방중소기업 :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대상 업종 조정 → 9개 업종 추가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 전기통신업 (유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등 추가) →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중계유선방송업 등 추가) → 의료업중 개인의원 제외 → 관광사업 추가(10%공제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06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7개 업종 ○ 감면율 - 소기업(도.소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제조업등) : 20% - 수도권외 소기업(제조업등) : 30%	☐ 업종추가 ○ 선박관리.광고.무역전시.분노처리.토양정화업 ○ 감면율 : 변동없음 ○ 일몰 연장 : '08.12.31(3년 연장)

	- 수도권 외 중기업(도·소매업 등) :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수도권 외 중기업 (제조업 등) : 15% ○ 적용기간 : '05.12.31 까지	
2008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법인·소득세 5~30% 감면 - 지역기업 규모업종 감면을 수도권소기업·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8개 업종 20% - 중기업·지식기반산업 10% - 지방소기업, 도·소매,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8개 업종 30% - 중기업·도·소매, 의료업 등 5% - 제조업 등 28개 업종 15% * 소기업기준 : 제조업(100명 미만), 광업등(50명미만), 기타(10명 미만)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 지식기반산업 추가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 광고물작성업
2009	☐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 ○ 제조업 : 100인 미만 ○ 광업·건설업·운수업 : 50인 미만 ○ 기 타 : 10인 미만	☐ 소기업 기준 변경 (좌동)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좌동)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중기업 소기업 수 도 권 10%(지식)10%/20% 非수도권5%/15%10%/30% <신설>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상 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010	□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 내 중기업 ○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광고물작성업 - <신설> - <신설> - <신설> ○ 감면율 : 10%	□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업종명 변경 및 업종 추가 - (작동)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 로그램 제작업 - (작동)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 음업 - (작동)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 (작동)
2014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 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어업) 10명 → 50명 미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추가

	○ 지식기반산업 (11개)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 감면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소재지	업종	기업		
			중	소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	20	
		지식기반 산업	10	20	
지방		도·소매업, 의료업	5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15	30	

기초자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의 한계

○ 기준간의 불일치

- '15년부터 대·중소기업 구분은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하위 분류인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업에 따라 매출액 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르면 소기업으로 판단하는 등 업종 및 기업에 따른 분류 범주에 편차 발생

○ 소기업 범위 판단의 중요성 증가

- 소기업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13년), 규모별 경쟁제도('09년) 등 소기업·소상공인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금융,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범위에 남아 있으려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려는 유인이 발생

○ 소기업 범위기준 편차

-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은 근로자수 50명과 10명으로 양분되어 있어 업종별로 소기업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범위기준 내 산업별 편차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업 규모 판단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표 5> 현행 기준의 업종별 소기업 분포

업종	중기업 수	소기업 수	비율	범위기준
A 농업,임업 및 어업	314	214	40.5%	10명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125	1,520	41.7%	10명
K 금융·보험업	1,032	1,017	49.6%	10명
S 개인서비스업	7,227	7,336	50.4%	10명
R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1,161	1,212	51.1%	10명
D 전기·가스·수도사업	51	61	54.5%	10명
P 교육서비스업	2,402	3,444	58.9%	10명
L 부동산·임대업	3,116	6,202	66.6%	10명
G 도·소매업	26,040	53,430	67.2%	10명
H 운수업	2,319	5,357	69.8%	50명
I 숙박·음식점업	6,003	12,444	67.5%	10명
N 사업서비스업	3,741	11,912	76.1%	50명
C 제조업	11,399	61,225	84.3%	50명
J 출판·영상·정보서비스	1,329	13,426	91.0%	50명
B 광업	24	352	93.6%	50명
F 건설업	1,319	20,676	94.0%	50명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81	28,300	95.0%	50명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31	32,756	95.0%	50명
전체	72,814	260,884	78.2%	

기초자료 : 기업생멸통계

- 범위기준이 2개로 되어 있어 업종간 소기업 분포에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범위기준이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 업종간 소기업 비중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업종간 불균형 지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 소기업 범위기준이 50명 미만인 업종의 소기업비중 평균은 87%, 10명 미만인 업종은 평균 54%로 나타남
 - 또한 같은 범주내에서도 업종별로 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10명 범주내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은 67.5%, 농/임/어업은 40.5%를 나타냈으며, 50명 범주내에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95%, 운수업은 69.8%를 나타냄

<표 6> 업종별 소기업 비중 편차

	업종	소기업 비중 (%)
50인 미만	운수업	69.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5.0
10인 미만	농/임/어업	40.5
	도소매업	67.2

기초자료 : 기업생멸통계

- 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의 소기업 범위 불일치
 -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면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은 50명, 조세특례제한법은 100명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소기업 기준이 정해지면 중·소기업 기준과 세법기준과의 조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 성장하지 않고 소기업에 머물기 위해 기준 이상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성장하는 기업이 소기업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증가한 기업 중 2012년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중기업)에서 50인 미만(소기업)으로 감소한 기업이 315개로 나타남

<표 7> 성장 기업의 소기업화

	2012년	매출액 20% 증가				전체
		X		○		
		직원 수 변동		직원 수 변동		
		X	○	X	○	
중기업	중기업	6,944	0	1,661	0	8,605
	소기업	0	2,338	0	315	2,653

기초자료 : NICE DB

주1 : 분석 기준

1. 매출액 20% 증가 : 2011년 대비 2012년에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경우○
2. 직원 수 변동 : 2011년,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었으나 2012년, 50인 미만이 된 경우 ○

주2 : 분석대상 모집단

1. 소상공인을 제외함
2. 소기업이 50인 이하인 업종만으로 제한함 (10인 미만 제외)
3. 1,2에 해당되는 업종들의 전체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 소기업 범위기준

1. 해외 소기업 정의

- 국제기구 및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의 소기업 범위기준은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를 나타냄
 - World Bank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이며, 매출액 또는 자산이 1백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MIGA, IFC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 매출액 3백만 달러 미만, 자산 3백만 달러 미만의 세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이라 정의하고 있음
 - UNIDO는 종업원 수가 10인~ 49인이고, 자본금이 4만 2천 3백 달러 이상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본금 규모 4만 2천 3백 달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micro)과 소기업(small)으로 나뉘며, 종업원 수가 9인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4만 2천 3백 달러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Micro-enterprise)으로 구분
- 미국에서는 ‘Small Business Act’에서 업종별로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달러를 기준으로 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World Bank, EU, 우리나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소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종업원 수 기준이 중소기업(Small Business)의 경우 500~1,500인 미만으로 정의되고 있음

- 다만, 5인 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Micro-enterprise)이라 정의하여
특별히 중소기업(Small Business)내에서도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시
행하고 있음
- EU에서는 소기업을 앞에서 언급한 MIGA, IFC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 5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과 자산은 1천만 유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하고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
켜면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소기업의 종업원 수를 20인 이하로 정하고 있음
 -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경우는 20인 이하, 상업과 서비스업은 5인 이
하로 제한하고 있음

<표 8> 국제기구 및 해외의 소기업 정의

	종업원 수 (명)	매출액	자산	자본금
① World Bank (Small enterprise)	50인 이하	1백만 달러 이하	1백만 달러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or 자산 1백만 이하]			
② MIGA, IFC (Small enterprise)	50인 미만	3백만 달러 미만	3백만 미만	
	-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과 같은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이라 정의함			
③ UNIDO (Small enterprise)	10인 - 49인			42,300 달러 이상
	[종업원 수 10인 - 49인]이고 [자본금 42,300 달러 이상] - 자본금 규모 42,300 달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나뉨 * 소상공인 : [9인 이하] 이거나 [자본금 42,300 달러 미만] * UNIDO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은 없지만 요르단, 아만에 그 사무국의 경우 현지 아만 산업무역부의 소기업 규정에 따름			
④ 미국	- 미국에서는 'Small Business Act'에 업종별로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달러를 기준으로 Small Business를 정의함 - 하지만 이는 World bank, EU, 우리나라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종업원 수 기준만 보아도 Small Business는 500 ~ 1500인 미만으로 정의됨 - 다만, 5인 이하인 기업을 Microenterprise라 정의해 특별히 Small Business 내에서도 별도 재정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⑤ 유럽연합(EU) (Small enterprise)	50인 미만	1천만 유로 이하	1천만 유로 이하	
	[50인 이하] 이고 [매출액 or 자산 1천만 유로 이하]			
⑥ 일본 (小規模企業)	20인 이하			
	- 제조업 및 기타 : 종업원 수 20인 이하 - 상업과 서비스업 : 종업원 수 5인 이하			

기초자료 :

- ① IFC :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 Count?, 2010
- ② USAID : Booklet of standardiz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finition, 2007
- ③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 Booklet of standardiz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finition, 2007
- ④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Small Business Act, 2008
- ⑤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 The new SME definition_ User guide and model declaration, 2005
- ⑥ 中小企業廳 中小企業基本法, 2013

2. 미국의 기업 범위기준 개편 연혁

-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은 자유기업제도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 하에 중소기업청의 존재를 승인함
 - 중소기업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활동 산업분야에서 독점적인 운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함
 - 본 법안은 엄격한 기준은 비실용적이라는 관점 하에 중소기업 정의에 대해 자유재량을 제공함
 - 당시 중소기업의 정의는 산업분야 내 타 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인지, 비독점적인지를 고려하여 정해졌음
 - 당시 War Mobilization and Reconversion Act of 1944 법규, 특별 위원회, 행정부는 산업별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함
- 1957년 1월 1일 중소기업청은 처음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제시함
 - 1957년 1월 1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로, 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 및 연간 수입금을 사용하기로 함
 - 1956년 1월 5일 의견 공모 기간 중 산업계 인사들은 제안된 중소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청은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배제하지 않는 좀 더 자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여 1957년 1월 1일 최종 제안하였음

- 美 회계 감사원 및 의회, '중소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지적
 - 1978년 GAO(미, 회계 감사원)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검토 후, 중소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그 경제학적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GAO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 및 조달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 (15년) 전에 만들어져 중소기업청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 각 기준의 제정 원리를 밝히지 않은 점, '중소기업이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음

- 1980년 3월 10일, 중소기업청은 기존 조달 및 기타 프로그램, 그리고 대출프로그램을 위해 분리되어 있던 기준의 통일을 제안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의를 근로자 수로 기준을 통일함
 - 이는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프로그램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
 - 중소기업청은 기존 기준의 경우 달러로 표시되어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인플레이션에 의해 왜곡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
 - 본 기준으로의 수정은 중소기업청과 정책 대상의 안정성 증대, 산업 간 왜곡 제거, 중소기업청이 물가 변동으로 기준을 수정해야되는 어려움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

- 1982년 3월, 중소기업청은 앞서 제시된 기준이 72%의 반대에 부딪혔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1983년 5월 6일,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제시함
 - 1983년 제안서는 기존 조달과 대출 각각을 위해 이원화되어있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였음

- 또한 기존 평균 연 매출액 및 수령액 기준을 유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기준을 수정, 제조업 대부분의 기준을 유지하고 기타 산업 부문에 미미한 수정만 제시함
- 1992.12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0개에서 9개로 간소화
 - 1992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분류에 있어서 30개의 다른 범위기준을 사용하였으나 (100인 이하 근로자, 500인 이하 중사자, 1,000인 이하 근로자, 5백만 평균 연간 매출액 등) 1992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은 범위기준을 9개로 간소화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의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약 20,000개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제안하였음
 - 하지만 이후 중소기업청은 제시된 4개의 수령액 기준 수용할 수 없는 예외를 발생시켜 기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결정하게 됨
 - 이후 중소기업청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몇몇 산업군에 조금씩 범위를 검토, 수정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2009년 4월, 사용해왔던 기존 매출액 기준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함
 - 기존 31개의 수령액 기준을 8개로 간소화 하였으며 유사 산업간 공통적인 기준을 제안함
- 2010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청이 본 법안이 발효되는 2010년 9월 27일을 기점으로 매 18개월마다 1/3이상의 산업의 범위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본 법안은 중소기업청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조정을 검토할 것,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및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 (Hous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and the Senat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에 '재검토시 평가에 사용된 요소, 수정된 사이즈를 위해 사용된 요소, 수정 혹은 수정하지 않은 의도 등'을 보고하고 30일 이내 공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중소기업법은 최소한 각 산업기준이 5년 중에 최소한 한번은 재검토될 것을 요구함
- 미국 중소기업청,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발의¹⁾
-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현행 유지 또는 개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
 - ①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섹터 31~33 전체에 해당하는 364개 산업, ② 북미표준산업분류 섹터 31~33, 42, 44, 45에 해당하지 않는 57개 산업 및 예외 5개에 대해 종업원 규모에 기초한 중소기업 범위를 평가

1)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제조업 및 기타 산업 부문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발의 (SBA Proposes Revisions to Employee-Based Size Standards for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y Sectors), SBA, 2014.9

<표 9> 미국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발의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NAICS 섹터 31~33 NAICS 324110	- NAICS 31~33의 209개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가 준을 확대 - 석유정제기업(NAICS 324110)의 범위기준인 정유 능력을 역일당 20만배럴로 확대하고, 납품량의 90%가 입찰자에 의해 정유되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
NAICS 섹터 31~33, 42, 44, 45에 해당하는 30개 산업 및 예외 3개	- 30개 산업 및 예외 3개 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종업원 수를 확대하되 - NAICS 섹터 31, 33, 42, 44, 45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산업에 대하여는 범위기준을 축소
기타	- NAICS 541519(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정보기술 부가가치 재판기업 예외 및 종업원 150명 기준을 삭제 - NAICS 481211 및 481212의 해양항공교통서비스 예외, 북미표준산업분류 하위부문 483의 해양교통 서비스 예외 및 매출액 3,050만 달러 기준을 삭제 * 이에 따라 범위기준표의 주석 15, 18도 자동으로 삭제

기초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제조업 및 기타 산업 부문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발의(SBA Proposes Revisions to Employee-Based Size Standards for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y Sectors), SBA, 2014.9

- 이번 개편안이 발의대로 채택될 경우, 약 1,650개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되어 정부 조달과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됨
- 미국 중소기업청은 범위기준 검토에 △평균 기업 규모, △창업비용 △진입 장벽, △경쟁 정도, △연방조달계약액의 중소기업 비율 등 개별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가 현 경제 조건과 해당 산업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지 확인

IV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및 개편안

1.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향

○ 기본방향

-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산출(output)로 기업을 분류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취지를 반영
- 가급적 현재 업종별 소기업 비중 유지
 -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및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분석하고, NICE(주)등의 자료를 보조 통계 자료로 활용
 -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 기업생멸통계기준)을 유지하되, 업종 간 비중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
 - 이와같은 방법은 기준의 변경에 의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기업 범위 기준 개편 시에도 반영된 바 있음

○ 업종별 비중 유지 결정 방법

-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비중을 먼저 결정하고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유지하는 방안(개편안에 적용)
 - 전 업종에 걸쳐서 소기업 비중이 비슷한 비율로 결정되어 업종내 평형성 유지
 - 하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소기업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
- 업종별로 소기업 비중을 구하여 새로운 기준에서도 유지하는 방안

- 기존의 비중을 감안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업종의 특성 및 범위기준의 부적절함이 반영되어 나타남

○ 세법과의 조화를 도모

- 현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범위기준과 세법의 범위기준 일치를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업규모 기준이 확정되면, 세법의 소기업 제한 기준과 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안1 :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개편안으로 제안)

- 현행 근로자 기준을 삭제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여 소기업 범위를 정함
- 중소기업 범위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매출액 기준을 적용
- 업종별 시뮬레이션 결과 '15년 시행 예정인 업종별 구분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소기업 비중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세법의 졸업기준(매출액 1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업종별로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대안2 : 매출액과 근로자수 지표 병행

- EU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참조하여, 근로자수와 매출액을 모두 만족하는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
- 매출액 기준은 대안1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자·매출액 병행 기준임을 감안하여 근로자 기준을 감안
- 유사사례(EU 등)가 존재하며 인위적 왜곡 가능성은 적으나, 중소기업 범위기준과의 불일치 문제 발생

2.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 업종간 소기업 비중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기업 규모의 판단은 업종의 규모 특성을 반영할 필요
 -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상 소규모로 영위되는 업종에 지원이 편중되고, 기타 기업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크기에 따라 표준 산업분류 18업종(대분류)을 5그룹(100/70/40/20/10억원)으로 분류

□ 업종별 적용 기준

- Group 1 :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 전기·가스·수도사업 1개업종
- Group 2 : 3년 평균 매출액 70억원 적용
 -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7개 업종
- Group 3 : 3년 평균 매출액 40억원 적용
 -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2개 업종
- Group 4 :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적용
 - 출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지원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Group 5 :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적용
 - 숙박·음식, 교육,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등 4개 업종

<표 10>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개편 (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미만)
100 억원	전기·가스 수도	상시근로자 10명
70 억원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10명
40 억원	하수·폐기물처리·환경, 부동산·임대업	상시근로자 10명
20 억원	출판·영상·정보·통신, 시설관리·사업지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상시근로자 5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명
10 억원	보건·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숙박·음식, 교육,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상시근로자 10명

<표 11> 소기업 범위기준 변동 내역

업종	현행				소기업 비율 (78.2%) 총족 매출액 (억원)	변경			
	중기업 수(개)	소기업 (소상공인제외)				범위 기준 매출액 (억원)	소기업 수(개)	비율 (%)	증감 (개)
		개수 (개)	비율 (%)	범위 기준 (근로 자수)					
합계	72,814	260,884	78.2%				259,280	77.5%	-1,604
D 전기·가스·수도사업	51	61	54.5%	10명	101	100	128	78.0%	67
K 금융·보험업	1,032	1,017	49.6%	10명	84	70	1,320	72.4%	303
B 광업	24	352	93.6%	50명	79		279	73.8%	-73
C 제조업	11,399	61,225	84.3%	50명	74		56,167	76.9%	-5,058
H 운수업	2,319	5,357	69.8%	50명	73		5,976	77.0%	619
F 건설업	1,319	20,676	94.0%	50명	72		17,219	78.0%	-3,457
A 농업 임업 및 어업	314	214	40.5%	10명	70		432	78.4%	218
G 도·소매업	26,040	53,430	67.2%	10명	67		63,320	79.7%	9,890
L 부동산·임대업	3,116	6,202	66.6%	10명	37	40	7,534	80.5%	1,332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125	1,520	41.7%	10명	36		2,983	81.3%	1,463
J 출판·영상·정보서비스	1,329	13,426	91.0%	50명	28	20	10,474	70.3%	-2,952
R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1,161	1,212	51.1%	10명	26		1,793	73.8%	581
N 사업서비스업	3,741	11,912	76.1%	50명	24		11,693	74.4%	-219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81	28,300	95.0%	50명	15		24,949	83.5%	-3,351
I 숙박·음식점업	6,003	12,444	67.5%	10명	12	10	12,429	67.4%	-15
P 교육서비스업	2,402	3,444	58.9%	10명	12		4,270	72.8%	826
S 개인서비스업	7,227	7,336	50.4%	10명	12		10,681	73.3%	3,345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31	32,756	95.0%	50명	9		27,633	80.1%	-5,123

기초자료 : 기업생멸통계

- 범위기준 변경으로 인한 소기업 분포 변화
 -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소기업 포함 입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종래의 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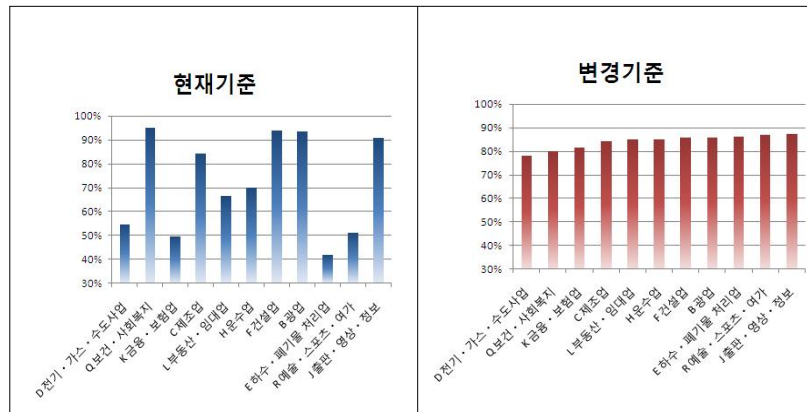
<표 12>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

개편 (매출액)	업종		Net 소기업 변경효과 -1,604
100 억원	증가기업	67	67
	감소기업	-	
70 억원	증가기업	11,030	2,442
	감소기업	-8,588	
40 억원	증가기업	2,795	2,795
	감소기업	-	
20 억원	증가기업	581	-5,941
	감소기업	-6,522	
10 억원	증가기업	4,171	-967
	감소기업	-5,138	

□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효과

- 정책 수요자 측면
 - 소기업 유지를 위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 인위적인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 수를 정제시키는 등 경영 의사결정의 왜곡을 제한
 - 성장 촉진 및 고용·투자 확대의 걸림돌 제거
 - 업종별 소기업 비중 편차를 해소
 - 불합리하게 소기업 지원에서 배제 되었던 일부 업종도 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어 불합리 시정
 - 업종 간 소기업 비중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업

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정책수립 가능
<업종별 소기업 비중 변화>



○ 정책 공급자 측면

- 정책의 '선택'과 '집중' 효과를 배가
 - 소기업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되고,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매출액 기준은 실질적으로 소기업에 정책을 집중화 할 수 있게 됨
- 고용 유지 및 확대에 대한 걸림돌 제거
 - 근로자 수 기준은 매출액 기준에 비하여 소기업 기준 유지가 용이
 -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고려 사항

-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정할 필요
 - 기업범위기준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범위기준 변경에 의한 충격 완화
 - 유예기간 또는 경과기간을 두어 기업 범위기준 변경으로 기업의 예상치 못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대비
-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업규모 변화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 기업의 실질 성장과 무관하게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소기업범위위원회(가칭)' 등을 가동하여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점검하고 범위기준에 반영할 필요

[부록1] 소기업 범위 시뮬레이션²⁾

I. 분석개요

□ 분석기초자료

○ 기업생멸통계

- 기업생멸통계자료는 행정자료(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등)로 등록 또는 신고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기준임
-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는 범위기준에 보다 더 적합한 측면이 있음

○ 경제총조사 자료

- 5년 마다 사업체 단위로 조사하며, 2010 처음 실시되었음

○ 본 분석에서는 기업생멸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경제총조사 자료 및 NICE 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하였음

2) 소기업 범위 시뮬레이션은 경제총조사와 기업생멸통계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음

○ 소기업 범위 산출 방법

1. 전체 기업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제외
2.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전체 평균 산출
3. 평균 비중 매출액을 각 매출 기준별 '중간값'을 활용하여 업종별 기준 설정

<적용기준>	10억원←	→20억원←	→40억원←	→70억원←	→100억원
<중간값>	15억원	30억원	50억원	85억원	

* 설정기준(예) : 전기·가스·수도업(101→100억원), 하수·폐기물처리업(36→4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20억원), 보건·사회복지사업(9→10억원) 등

II. 분석결과

(1) 경제총조사

<부표 1- 1> 현행(2014년) 기준 대·중소기업 분포현황

(단위: 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A	농업, 임업 및 어업	4	1,156	1,193	2,353
B	광업	6	548	1,211	1,765
C	10 식료품	82	3,939	49,078	53,099
	11 음료	19	227	922	1,168
	12 담배	7	3	1	11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13	3,165	16,350	19,528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6	2,773	19,671	22,470
	15 가죽, 가방, 신발	5	749	3,548	4,302
	16 목재, 나무제품	2	789	5,212	6,003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26	1,519	3,897	5,44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	1,373	14,909	16,284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4	131	141	286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149	2,320	4,831	7,300
	21 의약품, 의약품	26	412	409	847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49	5,146	11,668	16,863
	23 비금속 광물제품	65	2,374	6,837	9,276
	24 1차 금속	125	2,505	3,821	6,451
	25 금속가공제품	42	8,819	45,731	54,59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151	3,801	5,671	9,62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8	1,980	5,857	7,845
	28 전기장비	75	3,800	12,606	16,481
	29 기타 기계, 장비	71	8,553	24,171	32,795
	30 자동차, 트레일러	102	3,368	3,552	7,022
	31 기타 운송장비	39	1,392	1,148	2,579
	32 가구	14	1,281	8,998	10,293
	33 기타 제품	2	952	15,294	16,248
D	전기·가스·수도사업	174	805	520	1,499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9	2,920	2,463	5,402
F	건설업	185	23,686	72,962	96,833
G	도·소매업	381	47,252	829,021	876,654
H	운수업	88	9,442	337,649	347,179
I	숙박·음식점업	30	11,911	622,559	634,500

J	출판·영상·정보	121	10,170	16,084	26,375
K	금융·보험업	406	16,912	22,035	39,353
L	부동산·임대업	174	13,663	112,244	126,081
M	전문·과학·기술	218	15,072	55,311	70,601
N	사업서비스업	48	9,487	26,375	35,910
O	교육서비스업	333	18,118	147,513	165,964
P	보건·사회복지	70	6,870	100,072	107,012
Q	예술·스포츠·여가	38	3,816	99,094	102,948
R	개인서비스업	54	12,866	363,373	376,293
전체		3,463	266,065	3,074,002	3,343,530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2> 현행(2014년) 기준 중·소기업 분포현황

(단위 : 개 %)

		중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611	545	1,156	0.471
B	광업	19	529	548	0.965
C	10 식료품	656	3,283	3,939	0.833
	11 음료	44	183	227	0.806
	12 담배	.	3	3	1.000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375	2,790	3,165	0.882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68	2,505	2,773	0.903
	15 가죽, 가방, 신발	66	683	749	0.912
	16 목재, 나무제품	41	748	789	0.948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94	1,325	1,519	0.87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91	1,282	1,373	0.934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6	125	131	0.954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327	1,993	2,320	0.859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161	251	412	0.609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689	4,457	5,146	0.866
	23 비금속 광물제품	248	2,126	2,374	0.896
	24 1차 금속	387	2,118	2,505	0.846
	25 금속가공제품	826	7,993	8,819	0.90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837	2,964	3,801	0.78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257	1,723	1,980	0.870
	28 전기장비	524	3,276	3,800	0.862
	29 기타 기계, 장비	1,034	7,519	8,553	0.879
	30 자동차 트레일러	920	2,448	3,368	0.727
	31 기타 운송장비	479	913	1,392	0.656
	32 가구	93	1,188	1,281	0.927
	33 기타 제품	78	874	952	0.918
D	전기·가스·수도사업	588	217	805	0.27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689	1,231	2,920	0.422
F	건설업	3,451	20,235	23,686	0.854
G	도·소매업	15,120	32,132	47,252	0.680
H	운수업	2,628	6,814	9,442	0.722
I	숙박·음식점업	3,500	8,411	11,911	0.706
J	출판·영상·정보	1,108	9,062	10,170	0.891
K	금융·보험업	6,327	10,585	16,912	0.626
L	부동산·임대업	4,606	9,057	13,663	0.663
M	전문·과학·기술	1,205	13,867	15,072	0.920
N	사업서비스업	1,671	7,816	9,487	0.824
O	교육서비스업	10,084	8,034	18,118	0.443

P	보건·사회복지	327	6,543	6,870	0.952
Q	예술·스포츠·여가	1,784	2,032	3,816	0.532
R	개인서비스업	4,945	7,921	12,866	0.616
전체		68,264	197,801	266,065	0.743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3> 현행 기준(2014년) 업종별 대·중소 기업

(단위 : 개 %)

		대·중소구분		중소 기업 비중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4	2,349	99.8	2,353
B	광업	6	1,759	99.7	1,765
C	10 식료품	82	53,017	99.8	53,099
	11 음료	19	1,149	98.4	1,168
	12 담배	7	4	36.4	11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13	19,515	99.9	19,528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26	22,444	99.9	22,470
	15 가죽, 가방, 신발	5	4,297	99.9	4,302
	16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6,001	100.0	6,003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26	5,416	99.5	5,44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	16,282	100.0	16,284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14	272	95.1	286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149	7,151	98.0	7,300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26	821	96.9	847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49	16,814	99.7	16,863
	23 비금속 광물제품	65	9,211	99.3	9,276
	24 1차 금속	125	6,326	98.1	6,451
	25 금속가공제품; 기계, 가구	42	54,550	99.9	54,59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151	9,472	98.4	9,62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8	7,837	99.9	7,845
	28 전기장비	75	16,406	99.5	16,481
	29 기타 기계, 장비	71	32,724	99.8	32,795
	30 자동차, 트레일러	102	6,920	98.5	7,022
	31 기타 운송장비	39	2,540	98.5	2,579
	32 가구	14	10,279	99.9	10,293
	33 기타 제품	2	16,246	100.0	16,248
D	전기·가스·수도사업	174	1,325	88.4	1,499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9	5,383	99.6	5,402
F	건설업	185	96,648	99.8	96,833
G	도·소매업	381	876,273	100.0	876,654
H	운수업	88	347,091	100.0	347,179
I	숙박·음식점업	30	634,470	100.0	634,500
J	출판·영상·정보	121	26,254	99.5	26,375
K	금융·보험업	406	38,947	99.0	39,353

L	부동산·임대업	174	125,907	99.9	126,081
M	전문·과학·기술	218	70,383	99.7	70,601
N	사업서비스업	48	35,862	99.9	35,910
P	교육서비스업	333	165,631	99.8	165,964
Q	보건·사회복지	70	106,942	99.9	107,012
R	예술·스포츠·여가	38	102,910	100.0	102,948
S	개인서비스업	54	376,239	100.0	376,293
전체		3,463	3,340,067	99.9	3343,530

기초자료 : 통계청

<부표 1- 4> 개편안 마련 매출액 절사점

(단위 : 백만)

		신기준 0	신기준 1	신기준 2
A	농업, 임업 및 어업	6,183	6,000	6,183
B	광업	5,941	6,000	5,941
C	10 식료품	8,809	9,000	8,809
	11 음료	16,718	17,000	10,000
	12 담배	3,892	4,000	3,892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5,973	6,000	5,97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3,099	3,000	3,099
	15 가죽, 가방, 신발	4,455	4,000	4,455
	16 목재, 나무제품	5,310	5,000	5,310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7,277	7,000	7,27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510	4,000	3,51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4,476	14,000	10,000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1,206	11,000	10,000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21,781	22,000	10,000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7,352	7,000	7,352
	23 비금속 광물제품	8,470	8,000	8,470
	24 1차 금속	15,795	16,000	10,000
	25 금속가공제품	5,415	5,000	5,4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8,514	9,000	8,51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5,965	6,000	5,965
	28 전기장비	7,448	7,000	7,448
	29 기타 기계, 장비	7,144	7,000	7,144
	30 자동차 트레일러	13,190	13,000	10,000
	31 기타 운송장비	6,324	6,000	6,324
	32 가구	4,195	4,000	4,195
	33 기타 제품	4,016	4,000	4,016
	제조업 전체	7,235	7,000	7,235
D	전기·가스·수도사업	56,444	56,000	10,00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3,465	3,000	3,465
F	건설업	4,456	4,000	4,456
G	도·소매업	7,515	8,000	7,515
H	운수업	4,884	5,000	4,884
I	숙박·음식점업	1,357	1,000	1,357
J	출판·영상·정보	4,796	5,000	4,796
K	금융·보험업	21,200	21,000	10,000
L	부동산·임대업	1,112	1,000	1,112
M	전문·과학·기술	2,622	3,000	2,622

N	사업서비스업	2,868	3,000	2,868
O	교육서비스업	3,829	4,000	3,829
P	보건·사회복지	3,945	4,000	3,945
Q	예술·스포츠·여가	1,924	2,000	1,924
R	개인서비스업	1,221	1,000	1,221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 매출액 절사점 : 소기업 비중 75%
 - 각 업종에 대하여 소기업 평균 75% 적용
- 신기준 0 : 매출액 절사점의 상한 없음
- 신기준 1 : 매출액 절사점의 상한 없음
 - 다만 10억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
- 신기준 2 : 매출액 상한을 100억으로 제한함

<부표 1- 5> [신기준 1] 매출액 규모별 범주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 (10억 단위로 반올림)

(단위 : 백만)

	실제 절사점	사용 절사점
D 전기·가스·수도사업	56,444	56,000
C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1,781	22,000
K 금융·보험업	21,200	21,000
C11 음료	16,718	17,000
C24 1차 금속	15,795	16,000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4,476	14,000
C30 자동차, 트레일러	13,190	13,000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1,206	11,000
C10 식료품	8,809	9,00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8,514	9,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8,470	8,000
G 도·소매업	7,515	8,000
C28 전기장비	7,448	7,000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7,352	7,000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7,277	7,000
C29 기타 기계, 장비	7,144	7,000
C31 기타 운송장비	6,324	6,0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6,183	6,000
C13 섬유제품;의복 제외	5,973	6,00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5,965	6,000
B 광업	5,941	6,000
C25 금속가공제품	5,415	5,000
C16 목재, 나무제품	5,310	5,000
H 운수업	4,884	5,000
J 출판·영상·정보	4,796	5,000
F 건설업	4,456	4,000
C15 가죽, 가방, 신발	4,455	4,000
C32 가구	4,195	4,000
C33 기타 제품	4,016	4,000
P 보건·사회복지	3,945	4,000
C12 담배	3,892	4,000
O 교육서비스업	3,829	4,000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510	4,00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3,465	3,000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3,099	3,000

N 사업서비스업	2,868	3,000
M 전문·과학·기술	2,622	3,000
Q 예술·스포츠·여가	1,924	2,000
I 숙박·음식점업	1,357	1,000
R 개인서비스업	1,221	1,000
L 부동산·임대업	1,112	1,000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6> [신기준 2] 매출액 규모별 범주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

(단위 : 백만)

	실제 절사점	사용 절사점
D 전기·가스·수도사업	56,444	10,000
C21 의약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21,781	10,000
K 금융·보험업	21,200	10,000
C11 음료	16,718	10,000
C24 1차 금속	15,795	10,000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4,476	10,000
C30 자동차, 트레일러	13,190	10,000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품	11,206	10,000
C10 식료품	8,809	8,80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8,514	8,514
C23 비금속 광물제품	8,470	8,470
G 도·소매업	7,515	7,515
C28 전기장비	7,448	7,448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7,352	7,352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7,277	7,277
C29 기타 기계, 장비	7,144	7,144
C31 기타 운송장비	6,324	6,324
A 농업, 임업 및 어업	6,183	6,183
C13 섬유제품	5,973	5,97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5,965	5,965
B 광업	5,941	5,941
C25 금속가공제품	5,415	5,415
C16 목재, 나무제품	5,310	5,310
H 운수업	4,884	4,884
J 출판·영상·정보	4,796	4,796
F 건설업	4,456	4,456
C15 가죽, 가방, 신발	4,455	4,455
C32 가구	4,195	4,195
C33 기타 제품	4,016	4,016
P 보건·사회복지	3,945	3,945
C12 담배	3,892	3,892
O 교육서비스업	3,829	3,829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510	3,51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3,465	3,465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3,099	3,099
N 사업서비스업	2,868	2,868

M 전문·과학·기술	2,622	2,622
Q 예술·스포츠·여가	1,924	1,924
I 숙박·음식점업	1,357	1,357
R 개인서비스업	1,221	1,221
L 부동산·임대업	1,112	1,112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7> [신기준 이] 업종별 중·소기업 분포현황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

(단위 : 개 %)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1,153	289	867	0.818
B	광업	548	137	411	0.717
C	10 식료품	3,888	985	2,954	0.724
	11 음료	220	57	170	0.768
	12 담배	3	1	2	0.760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3,164	792	2,373	0.652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773	694	2,079	0.761
	15 가죽, 가방, 신발	749	188	561	0.779
	16 목재, 나무제품	785	198	591	0.726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519	380	1,139	0.78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373	344	1,029	0.762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9	33	98	0.771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2,289	580	1,740	0.757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384	103	309	0.763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5,128	1,287	3,859	0.686
	23 비금속 광물제품	2,362	594	1,780	0.748
	24 1차 금속	2,505	627	1,878	0.752
	25 금속가공제품	8,801	2,205	6,614	0.75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3,765	951	2,850	0.76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965	495	1,485	0.773
	28 전기장비	3,800	950	2,850	0.667
	29 기타 기계, 장비	8,522	2,139	6,414	0.750
	30 자동차 트레일러	3,327	842	2,526	0.750
	31 기타 운송장비	1,386	348	1,044	0.749
	32 가구	1,281	321	960	0.753
	33 기타 제품	951	238	714	0.750
	제조업 전체	61,069	15,352	46,019	0.749
D	전기·가스·수도사업	736	202	603	0.76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909	730	2,190	0.760
F	건설업	23,622	5,923	17,763	0.805
G	도·소매업	47,032	11,813	35,439	0.753
H	운수업	9,385	2,363	7,079	0.754
I	숙박·음식점업	11,893	2,978	8,933	0.750
J	출판·영상·정보	10,103	2,543	7,627	0.752
K	금융·보험업	16,027	4,312	12,600	0.757
L	부동산·임대업	13,587	3,416	10,247	0.756

M	전문·과학·기술	14,961	3,769	11,303	0.750
N	사업서비스업	9,477	2,373	7,114	0.753
O	교육서비스업	18,112	4,532	13,586	0.759
P	보건·사회복지	6,838	1,718	5,152	0.753
Q	예술·스포츠·여가	3,782	954	2,862	0.749
R	개인서비스업	12,851	3,217	9,649	0.751
전체		264,085	66,613	199,452	0.75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8> [신기준 0]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잔존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

(단위 : 개 %)

		구소기업 수	잔존기업 수	잔존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545	502	0.92
B	광업	529	409	0.77
C	10 식료품	3,283	2,792	0.85
	11 음료	183	162	0.89
	12 담배	3	2	0.67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2,790	2,312	0.8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505	2,020	0.81
	15 가죽, 가방, 신발	683	555	0.81
	16 목재, 나무제품	748	588	0.7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325	1,115	0.8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82	1,025	0.8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5	97	0.78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993	1,691	0.85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51	238	0.95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4,457	3,770	0.85
	23 비금속 광물제품	2,126	1,725	0.81
	24 1차 금속	2,118	1,776	0.84
	25 금속가공제품	7,993	6,470	0.8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964	2,630	0.8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723	1,451	0.84
	28 전기장비	3,276	2,780	0.85
	29 기타 기계, 장비	7,519	6,304	0.84
	30 자동차, 트레일러	2,448	2,212	0.90
	31 기타 운송장비	913	772	0.85
	32 가구	1,188	954	0.80
	33 기타 제품	874	709	0.81
	제조업 전체	52,770	44,288	0.84
D	전기·가스·수도사업	217	214	0.99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231	1,106	0.90
F	건설업	20,235	16,577	0.82
G	도·소매업	32,132	27,597	0.86
H	운수업	6,814	5,631	0.83
I	숙박·음식점업	8,411	7,408	0.88
J	출판·영상·정보	9,062	7,481	0.83
K	금융·보험업	10,585	8,524	0.81

L	부동산·임대업	9,057	7,587	0.84
M	전문·과학·기술	13,867	11,163	0.81
N	사업서비스업	7,816	6,552	0.84
O	교육서비스업	8,034	7,695	0.96
P	보건·사회복지	6,543	5,132	0.78
Q	예술·스포츠·여가	2,032	1,923	0.95
R	개인서비스업	7,921	7,098	0.90
전체		197,801	166,749	0.8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9> [신기준 0]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 억 고려하지 않음

(단위 : 개 %)

		신소기업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수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867	502	0.58
B	광업	411	409	1.00
C	10 식료품	2,954	2,792	0.95
	11 음료	170	162	0.95
	12 담배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2,373	2,312	0.9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079	2,020	0.97
	15 가죽, 가방, 신발	561	555	0.99
	16 목재, 나무제품	591	588	0.9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139	1,115	0.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29	1,025	1.0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98	97	0.99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740	1,691	0.97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309	238	0.77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3,859	3,770	0.98
	23 비금속 광물제품	1,780	1,725	0.97
	24 1차 금속	1,878	1,776	0.95
	25 금속가공제품	6,614	6,470	0.9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850	2,630	0.9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485	1,451	0.98
	28 전기장비	2,850	2,780	0.98
	29 기타 기계, 장비	6,414	6,304	0.98
	30 자동차, 트레일러	2,526	2,212	0.88
	31 기타 운송장비	1,044	772	0.74
	32 가구	960	954	0.99
	33 기타 제품	714	709	0.99
	제조업 전체	46,027	44,288	0.96
D	전기·가스·수도사업	603	214	0.35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190	1,106	0.51
F	건설업	17,763	16,577	0.93
G	도·소매업	35,439	27,597	0.78
H	운수업	7,079	5,631	0.80
I	숙박·음식점업	8,933	7,408	0.83
J	출판·영상·정보	7,627	7,481	0.98
K	금융·보험업	12,600	8,524	0.68

L	부동산·임대업	10,247	7,587	0.74
M	전문·과학·기술	11,303	11,163	0.99
N	사업서비스업	7,114	6,552	0.92
O	교육서비스업	13,586	7,695	0.57
P	보건·사회복지	5,152	5,132	1.00
Q	예술·스포츠·여가	2,862	1,923	0.67
R	개인서비스업	9,649	7,098	0.74
전체		199,444	166,749	0.8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0> [신기준 1] 업종별 중·소기업 분포현황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 (10억 단위로 반올림)

(단위 : 개 %)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1,153	294	862	0.748
B	광업	548	134	414	0.755
C	10 식료품	3,888	964	2,975	0.765
	11 음료	220	56	171	0.777
	12 담배	3	.	3	1.000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3,164	788	2,377	0.751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773	715	2,058	0.742
	15 가죽, 가방, 신발	749	212	537	0.717
	16 목재, 나무제품	785	210	579	0.738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519	396	1,123	0.73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373	297	1,076	0.784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9	33	98	0.760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2,289	592	1,728	0.755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384	103	309	0.805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5,128	1,354	3,792	0.739
	23 비금속 광물제품	2,362	637	1,737	0.735
	24 1차 금속	2,505	621	1,884	0.752
	25 금속가공제품	8,801	2,402	6,417	0.72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3,765	904	2,897	0.76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965	492	1,488	0.757
	28 전기장비	3,800	1,009	2,791	0.734
	29 기타 기계, 장비	8,522	2,189	6,364	0.747
	30 자동차 트레일러	3,327	857	2,511	0.755
	31 기타 운송장비	1,386	370	1,022	0.737
	32 가구	1,281	344	937	0.731
	33 기타 제품	951	240	712	0.749
	제조업 전체	61,069	15,829	45,542	0.746
D	전기·가스·수도사업	736	203	602	0.818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909	834	2,086	0.717
F	건설업	23,622	6,581	17,105	0.724
G	도·소매업	47,032	11,117	36,135	0.768
H	운수업	9,385	2,305	7,137	0.760
I	숙박·음식점업	11,893	4,155	7,756	0.652
J	출판·영상·정보	10,103	2,477	7,693	0.761
K	금융·보험업	16,027	4,421	12,491	0.779

L	부동산·임대업	13,587	3,797	9,866	0.726
M	전문·과학·기술	14,961	3,382	11,690	0.781
N	사업서비스업	9,477	2,265	7,222	0.762
O	교육서비스업	18,112	4,148	13,970	0.771
P	보건·사회복지	6,838	1,691	5,179	0.757
Q	예술·스포츠·여가	3,782	930	2,886	0.763
R	개인서비스업	12,851	4,053	8,813	0.686
전체		264,085	68,616	197,449	0.748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1> [신기준 1]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 (10억 단위로 반올림)

(단위 : 개 %)

		구소기업 수	잔존기업 수	잔존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545	501	0.92
B	광업	529	412	0.78
C	10 식료품	3,283	2,806	0.85
	11 음료	183	163	0.89
	12 담배	.	3	.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2,790	2,314	0.8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505	2,002	0.80
	15 가죽, 가방, 신발	683	531	0.78
	16 목재, 나무제품	748	576	0.77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325	1,099	0.8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82	1,071	0.84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5	97	0.78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1,993	1,681	0.84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51	238	0.95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4,457	3,708	0.83
	23 비금속 광물제품	2,126	1,687	0.79
	24 1차 금속	2,118	1,781	0.84
	25 금속가공제품	7,993	6,287	0.7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964	2,658	0.9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723	1,454	0.84
	28 전기장비	3,276	2,730	0.83
	29 기타 기계, 장비	7,519	6,259	0.83
	30 자동차, 트레일러	2,448	2,206	0.90
	31 기타 운송장비	913	768	0.84
	32 가구	1,188	931	0.78
	33 기타 제품	874	707	0.81
	제조업 전체	52,770	43,869	0.83
D	전기·가스·수도사업	217	214	0.99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231	1,082	0.88
F	건설업	20,235	16,062	0.79
G	도·소매업	32,132	28,006	0.87
H	운수업	6,814	5,658	0.83
I	숙박·음식점업	8,411	6,641	0.79
J	출판·영상·정보	9,062	7,539	0.83
K	금융·보험업	10,585	8,428	0.80
L	부동산·임대업	9,057	7,383	0.82
M	전문·과학·기술	13,867	11,527	0.83

N	사업서비스업	7,816	6,626	0.85
O	교육서비스업	8,034	7,757	0.97
P	보건·사회복지	6,543	5,159	0.79
Q	예술·스포츠·여가	2,032	1,928	0.95
R	개인서비스업	7,921	6,724	0.85
전체		197,801	165,404	0.8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2> [신기준 1]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하지 않음(10억 단위로 반올림)

(단위 : 개 %)

		신소기업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수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862	501	0.58
B	광업	414	412	1.00
C	10 식료품	2,975	2,806	0.94
	11 음료	171	163	0.95
	12 담배	.	3	.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2,377	2,314	0.9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058	2,002	0.97
	15 가죽, 가방, 신발	537	531	0.99
	16 목재, 나무제품	579	576	0.9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123	1,099	0.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76	1,071	1.0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98	97	0.99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728	1,681	0.97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309	238	0.77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3,792	3,708	0.98
	23 비금속 광물제품	1,737	1,687	0.97
	24 1차 금속	1,884	1,781	0.95
	25 금속가공제품	6,417	6,287	0.9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897	2,658	0.9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488	1,454	0.98
	28 전기장비	2,791	2,730	0.98
	29 기타 기계, 장비	6,364	6,259	0.98
	30 자동차, 트레일러	2,511	2,206	0.88
	31 기타 운송장비	1,022	768	0.75
	32 가구	937	931	0.99
	33 기타 제품	712	707	0.99
	제조업 전체	45,542	43,869	0.96
D	전기·가스·수도사업	602	214	0.36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086	1,082	0.52
F	건설업	17,105	16,062	0.94
G	도·소매업	36,135	28,006	0.78
H	운수업	7,137	5,658	0.79
I	숙박·음식점업	7,756	6,641	0.86
J	출판·영상·정보	7,693	7,539	0.98
K	금융·보험업	12,491	8,428	0.67

L	부동산·임대업	9,866	7,383	0.75
M	전문·과학·기술	11,690	11,527	0.99
N	사업서비스업	7,222	6,626	0.92
O	교육서비스업	13,970	7,757	0.56
P	보건·사회복지	5,179	5,159	1.00
Q	예술·스포츠·여가	2,886	1,928	0.67
R	개인서비스업	8,813	6,724	0.76
전체		197,493	165,404	0.8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3> [신기준 2] 업종별 대 중소기업 분포현황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

(단위 : 개 %)

		중소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1,153	289	867	0.75
B	광업	548	137	411	0.75
C	10 식료품	3,888	985	2,954	0.76
	11 음료	220	71	156	0.71
	12 담배	3	1	2	0.67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3,164	792	2,373	0.75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773	694	2,079	0.75
	15 가죽, 가방, 신발	749	188	561	0.75
	16 목재, 나무제품	785	198	591	0.75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519	380	1,139	0.7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373	344	1,029	0.75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9	44	87	0.67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2,289	658	1,662	0.73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384	173	239	0.62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5,128	1,287	3,859	0.75
	23 비금속 광물제품	2,362	594	1,780	0.75
	24 1차 금속	2,505	905	1,600	0.64
	25 금속가공제품	8,801	2,205	6,614	0.7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3,765	951	2,850	0.7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965	495	1,485	0.76
	28 전기장비	3,800	950	2,850	0.75
	29 기타 기계, 장비	8,522	2,139	6,414	0.75
	30 자동차 트레일러	3,327	1,036	2,332	0.70
	31 기타 운송장비	1,386	348	1,044	0.75
	32 가구	1,281	321	960	0.75
	33 기타 제품	951	238	714	0.75
	제조업 전체	61,069	15,344	46,027	0.75
D	전기·가스·수도사업	736	508	297	0.4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909	730	2,190	0.75
F	건설업	23,622	5,923	17,763	0.75
G	도·소매업	47,032	11,813	35,439	0.75
H	운수업	9,385	2,363	7,079	0.75
I	숙박·음식점업	11,893	2,978	8,933	0.75
J	출판·영상·정보	10,103	2,543	7,627	0.76
K	금융·보험업	16,027	9,234	7,678	0.48
L	부동산·임대업	13,587	3,416	10,247	0.75

M	전문·과학·기술	14,961	3,769	11,303	0.76
N	사업서비스업	9,477	2,373	7,114	0.75
O	교육서비스업	18,112	4,532	13,586	0.75
P	보건·사회복지	6,838	1,718	5,152	0.75
Q	예술·스포츠·여가	3,782	954	2,862	0.76
R	개인서비스업	12,851	3,217	9,649	0.75
전체		264,085	71,841	194,224	0.7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4> [신기준 2]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남아있는 비율
(잔존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

(단위 : 개 %)

		구소기업 수	잔존기업 수	잔존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545	502	0.92
B	광업	529	409	0.77
C	10 식료품	3,283	2,792	0.85
	11 음료	183	152	0.83
	12 담배	3	2	0.67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2,790	2,312	0.8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505	2,020	0.81
	15 가죽, 가방, 신발	683	555	0.81
	16 목재, 나무제품	748	588	0.7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325	1,115	0.8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82	1,025	0.8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25	86	0.69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993	1,626	0.82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51	211	0.84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4,457	3,770	0.85
	23 비금속 광물제품	2,126	1,725	0.81
	24 1차 금속	2,118	1,538	0.73
	25 금속가공제품	7,993	6,470	0.8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964	2,630	0.8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723	1,451	0.84
	28 전기장비	3,276	2,780	0.85
	29 기타 기계, 장비	7,519	6,304	0.84
	30 자동차, 트레일러	2,448	2,085	0.85
	31 기타 운송장비	913	772	0.85
	32 가구	1,188	954	0.80
	33 기타 제품	874	709	0.81
	제조업 전체	52,770	44,288	0.84
D	전기·가스·수도사업	217	138	0.64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231	1,106	0.90
F	건설업	20,235	16,577	0.82
G	도·소매업	32,132	27,597	0.86
H	운수업	6,814	5,631	0.83
I	숙박·음식점업	8,411	7,408	0.88
J	출판·영상·정보	9,062	7,481	0.83
K	금융·보험업	10,585	5,228	0.49
L	부동산·임대업	9,057	7,587	0.84

M	전문·과학·기술	13,867	11,163	0.81
N	사업서비스업	7,816	6,552	0.84
O	교육서비스업	8,034	7,695	0.96
P	보건·사회복지	6,543	5,132	0.78
Q	예술·스포츠·여가	2,032	1,923	0.95
R	개인서비스업	7,921	7,098	0.90
전체		197,801	162,899	0.82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5> [신기준 2] 구소기업이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비율

* 매출액 절사점 : 100억 고려

(단위 : 개 %)

		신소기업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수	신소기업에 포함되는 구소기업 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867	502	0.58
B	광업	411	409	1.00
C	10 식료품	2,954	2,792	0.95
	11 음료	156	152	0.97
	12 담배	.	2	.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2,373	2,312	0.9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2,079	2,020	0.97
	15 가죽, 가방, 신발	561	555	0.99
	16 목재, 나무제품	591	588	0.9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1,139	1,115	0.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29	1,025	1.00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87	86	0.99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1,662	1,626	0.98
	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239	211	0.88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3,859	3,770	0.98
	23 비금속 광물제품	1,780	1,725	0.97
	24 1차 금속	1,600	1,538	0.96
	25 금속가공제품	6,614	6,470	0.9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850	2,630	0.9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485	1,451	0.98
	28 전기장비	2,850	2,780	0.98
	29 기타 기계, 장비	6,414	6,304	0.98
	30 자동차, 트레일러	2,332	2,085	0.89
	31 기타 운송장비	1,044	772	0.74
	32 가구	960	954	0.99
	33 기타 제품	714	709	0.99
	제조업 전체	46,027	44,288	0.96
D	전기·가스·수도사업	297	138	0.46
E	하수·폐기물 처리업	2,190	1,106	0.51
F	건설업	17,763	16,577	0.93
G	도·소매업	35,439	27,597	0.78
H	운수업	7,079	5,631	0.80
I	숙박·음식점업	8,933	7,408	0.83
J	출판·영상·정보	7,627	7,481	0.98
K	금융·보험업	7,678	5,228	0.68

L	부동산·임대업	10,247	7,587	0.74
M	전문·과학·기술	11,303	11,163	0.99
N	사업서비스업	7,114	6,552	0.92
O	교육서비스업	13,586	7,695	0.57
P	보건·사회복지	5,152	5,132	1.00
Q	예술·스포츠·여가	2,862	1,923	0.67
R	개인서비스업	9,649	7,098	0.74
전체		193,571	162,899	0.84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6> [신기준 1] 기준변경 순효과

(단위: 개)

		중기업 → 소기업	소기업 → 중기업	net 소기업 변경효과
A	농업, 임업 및 어업	361	44	317
B	광업	2	117	-115
C	10 식료품	169	477	-308
	11 음료	8	20	-12
	12 담배	.	.	.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63	476	-41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56	503	-447
	15 가죽, 가방, 신발	6	152	-146
	16 목재, 나무제품	3	172	-169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24	226	-20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5	211	-206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	28	-27
	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	47	312	-265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71	13	58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84	749	-665
	23 비금속 광물제품	50	439	-389
	24 1차 금속	103	337	-234
	25 금속가공제품	130	1,706	-1,57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39	306	-6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34	269	-235
	28 전기장비	61	546	-485
	29 기타 기계, 장비	105	1,260	-1,155
	30 자동차, 트레일러	305	242	63
	31 기타 운송장비	254	145	109
	32 가구	6	257	-251
	33 기타 제품	5	167	-162
	제조업 전체	1,673	8,901	-7,228
D	전기·가스·수도사업	388	3	385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004	149	855
F	건설업	1,043	4,173	-3,130
G	도·소매업	8,129	4,126	4,003
H	운수업	1,479	1,156	323
I	숙박·음식점업	1,115	1,770	-655
J	출판·영상·정보	154	1,523	-1,369
K	금융·보험업	4,063	2,157	1,906
L	부동산·임대업	2,483	1,674	809

M	전문·과학·기술	163	2,340	-2,177
N	사업서비스업	596	1,190	-594
O	교육서비스업	6,213	277	5,936
P	보건·사회복지	20	1,384	-1,364
Q	예술·스포츠·여가	958	104	854
R	개인서비스업	2,089	1,197	892
	전체	31,933	32,285	-352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부표 1- 17> [신기준 2] 기준변경 순효과

(단위: 개)

		중기업 → 소기업	소기업 → 중기업	net 소기업 변경효과
A	농업, 임업 및 어업	365	43	322
B	광업	2	120	-118
C	10 식료품	162	491	-329
	11 음료	4	31	-27
	12 담배	.	1	-1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61	478	-41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59	485	-426
	15 가죽, 가방, 신발	6	128	-122
	16 목재, 나무제품	3	160	-157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24	210	-18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	257	-253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1	39	-38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	36	367	-331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8	40	-12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89	687	-598
	23 비금속 광물제품	55	401	-346
	24 1차 금속	62	580	-518
	25 금속가공제품	144	1,523	-1,37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20	334	-11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34	272	-238
	28 전기장비	70	496	-426
	29 기타 기계, 장비	110	1,215	-1,105
	30 자동차, 트레일러	247	363	-116
	31 기타 운송장비	272	141	131
	32 가구	6	234	-228
	33 기타 제품	5	165	-160
	제조업 전체	1,739	8,482	-6,743
D	전기·가스·수도사업	159	79	80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084	125	959
F	건설업	1,186	3,658	-2,472
G	도·소매업	7,842	4,535	3,307
H	운수업	1,448	1,183	265
I	숙박·음식점업	1,525	1,003	522
J	출판·영상·정보	146	1,581	-1,435
K	금융·보험업	2,450	5,357	-2,907
L	부동산·임대업	2,660	1,470	1,190

M	전문·과학·기술	140	2,704	-2,564
N	사업서비스업	562	1,264	-702
O	교육서비스업	5,891	339	5,552
P	보건·사회복지	20	1,411	-1,391
Q	예술·스포츠·여가	939	109	830
R	개인서비스업	2,551	823	1,728
	전체	30,709	34,286	-3,577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 기초자료 : 경제총조사(2010)

(단위 : 개, %)

<부표 1- 18> A. 농업, 임업 및 어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4	0.35	4	0.35
0억~<10억	455	39.36	459	39.71
10억~<20억	141	12.20	600	51.9
20억~<30억	66	5.71	666	57.61
30억~<40억	82	7.09	748	64.71
40억~<50억	54	4.67	802	69.38
50억~<60억	60	5.19	862	74.57
60억~<70억	45	3.89	907	78.46
70억~<80억	26	2.25	933	80.71
80억~<90억	17	1.47	950	82.18
90억~<100억	15	1.30	965	83.48
100억~<150억	62	5.36	1,027	88.84
150억~<200억	52	4.50	1,079	93.34
200억 이상	77	6.66	1,156	100.00

<부표 1- 19> B. 광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6	1.09	6	1.09
0억~<10억	94	17.15	100	18.25
10억~<20억	88	16.06	188	34.31
20억~<30억	93	16.97	281	51.28
30억~<40억	48	8.76	329	60.04
40억~<50억	42	7.66	371	67.70
50억~<60억	43	7.85	414	75.55
60억~<70억	28	5.11	442	80.66
70억~<80억	21	3.83	463	84.49
80억~<90억	16	2.92	479	87.41
90억~<100억	12	2.19	491	89.60
100억~<150억	27	4.93	518	94.53
150억~<200억	14	2.55	532	97.08
200억 이상	16	2.92	548	100.00

<부표 1- 20> C. 제조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27	0.04	27	0.04
0억~<10억	8,965	14.61	8,992	14.65
10억~<20 억	12,168	19.83	21,160	34.48
20억~<30 억	8,907	14.51	30,067	48.99
30억~<40 억	5,908	9.63	35,975	58.62
40억~<50 억	4,145	6.75	40,120	65.37
50억~<60 억	3,068	5.00	43,188	70.37
60억~<70 억	2,354	3.84	45,542	74.21
70억~<80 억	1,805	2.94	47,347	77.15
80억~<90 억	1,560	2.54	48,907	79.69
90억~<100 억	1,230	2.00	50,137	81.69
100억~<150 억	3,914	6.38	54,051	88.07
150억~<200 억	1,919	3.13	55,970	91.20
200 억 이상	5,401	8.80	61,371	100.00

<부표 1- 21> C10 식료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3	1	0.03
0억~<10억	733	18.61	734	18.63
10억~<20 억	707	17.95	1,441	36.58
20억~<30 억	460	11.68	1,901	48.26
30억~<40 억	315	8.00	2,216	56.26
40억~<50 억	215	5.46	2,431	61.72
50억~<60 억	188	4.77	2,619	66.49
60억~<70 억	148	3.76	2,767	70.25
70억~<80 억	107	2.72	2,874	72.96
80억~<90 억	101	2.56	2,975	75.53
90억~<100 억	104	2.64	3,079	78.17
100억~<150 억	276	7.01	3,355	85.17
150억~<200 억	135	3.43	3,490	88.60
200 억 이상	449	11.40	3,939	100.00

<부표 1- 22> C11 음료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2	22.91	52	22.91
10억~<20 억	40	17.62	92	40.53
20억~<30 억	19	8.37	111	48.90
30억~<40 억	9	3.96	120	52.86
40억~<50 억	5	2.20	125	55.07
50억~<60 억	10	4.41	135	59.47
60억~<70 억	3	1.32	138	60.79
70억~<80 억	7	3.08	145	63.88
80억~<90 억	4	1.76	149	65.64
90억~<100 억	7	3.08	156	68.72
100억~<150 억	11	4.85	167	73.57
150억~<200 억	12	5.29	179	78.85
200 억 이상	48	21.15	227	100.00

<부표 1- 23> C12 담배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	33.33	1	33.33
20억~<30 억	1	33.33	2	66.67
30억~<40 억	1	33.33	3	100.00

<부표 1- 24>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2	0.06	2	0.06
0억~<10억	637	20.13	639	20.19
10억~<20 억	668	21.11	1,307	41.30
20억~<30 억	439	13.87	1,746	55.17
30억~<40 억	277	8.75	2,023	63.92
40억~<50 억	203	6.41	2,226	70.33
50억~<60 억	151	4.77	2,377	75.10
60억~<70 억	117	3.70	2,494	78.80
70억~<80 억	90	2.84	2,584	81.64
80억~<90 억	78	2.46	2,662	84.11
90억~<100 억	62	1.96	2,724	86.07
100억~<150 억	184	5.81	2,908	91.88
150억~<200 억	100	3.16	3,008	95.04
200 억 이상	157	4.96	3,165	100.00

<부표 1- 25>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4	1	0.04
0억~<10억	1,497	53.98	1,498	54.02
10억~<20 억	380	13.70	1,878	67.72
20억~<30 억	180	6.49	2,058	74.22
30억~<40 억	136	4.90	2,194	79.12
40억~<50 억	81	2.92	2,275	82.04
50억~<60 억	71	2.56	2,346	84.60
60억~<70 억	54	1.95	2,400	86.55
70억~<80 억	33	1.19	2,433	87.74
80억~<90 억	41	1.48	2,474	89.22
90억~<100 억	24	0.87	2,498	90.08
100억~<150 억	113	4.08	2,611	94.16
150억~<200 억	48	1.73	2,659	95.89
200 억 이상	114	4.11	2,773	100.00

<부표 1- 26> C15 가죽,가방,신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28	30.44	228	30.44
10억~<20 억	164	21.90	392	52.34
20억~<30 억	92	12.28	484	64.62
30억~<40 억	53	7.08	537	71.70
40억~<50 억	46	6.14	583	77.84
50억~<60 억	22	2.94	605	80.77
60억~<70 억	17	2.27	622	83.04
70억~<80 억	14	1.87	636	84.91
80억~<90 억	20	2.67	656	87.58
90억~<100 억	12	1.60	668	89.19
100억~<150 억	30	4.01	698	93.19
150억~<200 억	17	2.27	715	95.46
200 억 이상	34	4.54	749	100.00

<부표 1- 27> C16 목재,나무제품,가구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03	13.05	103	13.05
10억~<20 억	193	24.46	296	37.52
20억~<30 억	138	17.49	434	55.01
30억~<40 억	89	11.28	523	66.29
40억~<50 억	56	7.10	579	73.38
50억~<60 억	40	5.07	619	78.45
60억~<70 억	29	3.68	648	82.13
70억~<80 억	26	3.30	674	85.42
80억~<90 억	21	2.66	695	88.09
90억~<100 억	20	2.53	715	90.62
100억~<150 억	33	4.18	748	94.80
150억~<200 억	13	1.65	761	96.45
200 억 이상	28	3.55	789	100.00

<부표 1- 28> C17 펄프,종이, 종이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35	8.89	135	8.89
10억 ~<20억	276	18.17	411	27.06
20억 ~<30억	265	17.45	676	44.50
30억 ~<40억	173	11.39	849	55.89
40억 ~<50억	120	7.90	969	63.79
50억 ~<60억	93	6.12	1,062	69.91
60억 ~<70억	61	4.02	1,123	73.93
70억 ~<80억	53	3.49	1,176	77.42
80억 ~<90억	35	2.30	1,211	79.72
90억 ~<100억	27	1.78	1,238	81.50
100억~<150 억	108	7.11	1,346	88.61
150억~<200 억	44	2.90	1,390	91.51
200억 이상	129	8.49	1,519	100.00

<부표 1- 29>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7	1	0.07
0억~<10억	274	19.96	275	20.03
10억~<20억	464	33.79	739	53.82
20억~<30억	221	16.10	960	69.92
30억~<40억	116	8.45	1,076	78.37
40억~<50억	76	5.54	1,152	83.90
50억~<60억	62	4.52	1,214	88.42
60억~<70억	32	2.33	1,246	90.75
70억~<80억	23	1.68	1,269	92.43
80억~<90억	20	1.46	1,289	93.88
90억~<100억	8	0.58	1,297	94.46
100억~<150억	38	2.77	1,335	97.23
150억~<200억	10	0.73	1,345	97.96
200억 이상	28	2.04	1,373	100.00

<부표 1- 30>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	3.82	5	3.82
10억~<20억	10	7.63	15	11.45
20억~<30억	10	7.63	25	19.08
30억~<40억	14	10.69	39	29.77
40억~<50억	10	7.63	49	37.4
50억~<60억	8	6.11	57	43.51
60억~<70억	8	6.11	65	49.62
70억~<80억	7	5.34	72	54.96
80억~<90억	9	6.87	81	61.83
90억~<100억	6	4.58	87	66.41
100억~<150억	14	10.69	101	77.10
150억~<200억	8	6.11	109	83.21
200억 이상	22	16.79	131	100.00

<부표 1- 31>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4	1	0.04
0억~<10억	174	7.50	175	7.54
10억~<20억	312	13.45	487	20.99
20억~<30억	271	11.68	758	32.67
30억~<40억	231	9.96	989	42.63
40억~<50억	187	8.06	1,176	50.69
50억~<60억	145	6.25	1,321	56.94
60억~<70억	113	4.87	1,434	61.81
70억~<80억	91	3.92	1,525	65.73
80억~<90억	75	3.23	1,600	68.97
90억~<100억	62	2.67	1,662	71.64
100억~<150억	222	9.57	1,884	81.21
150억~<200억	94	4.05	1,978	85.26
200억 이상	342	14.74	2,320	100.00

<부표 1- 32>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24	1	0.24
0억~<10억	40	9.71	41	9.95
10억~<20억	33	8.01	74	17.96
20억~<30억	44	10.68	118	28.64
30억~<40억	19	4.61	137	33.25
40억~<50억	20	4.85	157	38.11
50억~<60억	20	4.85	177	42.96
60억~<70억	14	3.40	191	46.36
70억~<80억	17	4.13	208	50.49
80억~<90억	21	5.10	229	55.58
90억~<100억	10	2.43	239	58.01
100억~<150억	28	6.80	267	64.81
150억~<200억	31	7.52	298	72.33
200억 이상	114	27.67	412	100.00

<부표 1- 33>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47	10.63	547	10.63
10억~<20억	955	18.56	1,502	29.19
20억~<30억	836	16.25	2,338	45.43
30억~<40억	565	10.98	2,903	56.41
40억~<50억	361	7.02	3,264	63.43
50억~<60억	287	5.58	3,551	69.01
60억~<70억	241	4.68	3,792	73.69
70억~<80억	170	3.30	3,962	76.99
80억~<90억	141	2.74	4,103	79.73
90억~<100억	119	2.31	4,222	82.04
100억~<150억	350	6.80	4,572	88.85
150억~<200억	160	3.11	4,732	91.95
200억 이상	414	8.05	5,146	100.00

<부표 1- 34> C23 비금속광물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4	1	0.04
0억~<10억	200	8.42	201	8.47
10억~<20억	363	15.29	564	23.76
20억~<30억	330	13.9	894	37.66
30억~<40억	218	9.18	1,112	46.84
40억~<50억	222	9.35	1,334	56.19
50억~<60억	151	6.36	1,485	62.55
60억~<70억	123	5.18	1,608	67.73
70억~<80억	129	5.43	1,737	73.17
80억~<90억	90	3.79	1,827	76.96
90억~<100억	66	2.78	1,893	79.74
100억~<150억	208	8.76	2,101	88.50
150억~<200억	74	3.12	2,175	91.62
200억 이상	199	8.38	2,374	100.00

<부표 1- 35> C24 1 차금속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4	1	0.04
0억~<10억	178	7.11	179	7.15
10억~<20억	297	11.86	476	19.00
20억~<30억	268	10.70	744	29.70
30억~<40억	216	8.62	960	38.32
40억~<50억	168	6.71	1,128	45.03
50억~<60억	125	4.99	1,253	50.02
60억~<70억	112	4.47	1,365	54.49
70억~<80억	82	3.27	1,447	57.76
80억~<90억	80	3.19	1,527	60.96
90억~<100억	73	2.91	1,600	63.87
100억~<150억	262	10.46	1,862	74.33
150억~<200억	132	5.27	1,994	79.60
200억 이상	511	20.40	2,505	100.00

<부표 1- 36> C25 금속가공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7	0.08	7	0.08
0억~<10억	1,094	12.41	1,101	12.48
10억~<20 억	2,177	24.69	3,278	37.17
20억~<30 억	1,531	17.36	4,809	54.53
30억~<40 억	953	10.81	5,762	65.34
40억~<50 억	655	7.43	6,417	72.76
50억~<60 억	418	4.74	6,835	77.50
60억~<70 억	310	3.52	7,145	81.02
70억~<80 억	225	2.55	7,370	83.57
80억~<90 억	197	2.23	7,567	85.80
90억~<100 억	158	1.79	7,725	87.59
100억~<150 억	450	5.10	8,175	92.70
150억~<200 억	171	1.94	8,346	94.64
200 억 이상	473	5.36	8,819	100.00

<부표 1- 37>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3	1	0.03
0억~<10억	623	16.39	624	16.42
10억~<20억	721	18.97	1,345	35.39
20억~<30억	497	13.08	1,842	48.46
30억~<40억	334	8.79	2,176	57.25
40억~<50억	205	5.39	2,381	62.64
50억~<60억	177	4.66	2,558	67.30
60억~<70억	126	3.31	2,684	70.61
70억~<80억	117	3.08	2,801	73.69
80억~<90억	96	2.53	2,897	76.22
90억~<100억	58	1.53	2,955	77.74
100억~<150억	223	5.87	3,178	83.61
150억~<200억	154	4.05	3,332	87.66
200억 이상	469	12.34	3,801	100.00

<부표 1- 38>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3	0.15	3	0.15
0억~<10억	357	18.03	360	18.18
10억~<20억	405	20.45	765	38.64
20억~<30억	283	14.29	1,048	52.93
30억~<40억	198	10.00	1,246	62.93
40억~<50억	140	7.07	1,386	70.00
50억~<60억	102	5.15	1,488	75.15
60억~<70억	69	3.48	1,557	78.64
70억~<80억	52	2.63	1,609	81.26
80억~<90억	39	1.97	1,648	83.23
90억~<100억	38	1.92	1,686	85.15
100억~<150억	107	5.40	1,793	90.56
150억~<200억	59	2.98	1,852	93.54
200억 이상	128	6.46	1,980	100.00

<부표 1- 39> C28 전기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3	0.08	3	0.08
0억~<10억	460	12.11	463	12.18
10억~<20억	758	19.95	1,221	32.13
20억~<30억	603	15.87	1,824	48
30억~<40억	348	9.16	2,172	57.16
40억~<50억	272	7.16	2,444	64.32
50억~<60억	200	5.26	2,644	69.58
60억~<70억	147	3.87	2,791	73.45
70억~<80억	112	2.95	2,903	76.39
80억~<90억	92	2.42	2,995	78.82
90억~<100억	80	2.11	3,075	80.92
100억~<150억	254	6.68	3,329	87.61
150억~<200억	119	3.13	3,448	90.74
200억 이상	352	9.26	3,800	100

<부표 1- 40> C29 기타기계 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3	0.04	3	0.04
0억~<10억	630	7.37	633	7.40
10억~<20억	1,809	21.15	2,442	28.55
20억~<30억	1,431	16.73	3,873	45.28
30억~<40억	985	11.52	4,858	56.80
40억~<50억	671	7.85	5,529	64.64
50억~<60억	475	5.55	6,004	70.20
60억~<70억	360	4.21	6,364	74.41
70억~<80억	259	3.03	6,623	77.43
80억~<90억	232	2.71	6,855	80.15
90억~<100억	178	2.08	7,033	82.23
100억~<150억	567	6.63	7,600	88.86
150억~<200억	285	3.33	7,885	92.19
200억 이상	668	7.81	8,553	100.00

<부표 1- 41> C30 자동차, 트레일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346	10.27	346	10.27
10억~<20억	549	16.3	895	26.57
20억~<30억	403	11.97	1,298	38.54
30억~<40억	306	9.09	1,604	47.62
40억~<50억	182	5.40	1,786	53.03
50억~<60억	160	4.75	1,946	57.78
60억~<70억	118	3.50	2,064	61.28
70억~<80억	105	3.12	2,169	64.40
80억~<90억	86	2.55	2,255	66.95
90억~<100억	77	2.29	2,332	69.24
100억~<150억	283	8.40	2,615	77.64
150억~<200억	183	5.43	2,798	83.08
200억 이상	570	16.92	3,368	100.00

<부표 1- 42> C31 기타운송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	0.07	1	0.07
0억~<10억	207	14.87	208	14.94
10억~<20억	270	19.40	478	34.34
20억~<30억	204	14.66	682	48.99
30억~<40억	145	10.42	827	59.41
40억~<50억	119	8.55	946	67.96
50억~<60억	76	5.46	1,022	73.42
60억~<70억	73	5.24	1,095	78.66
70억~<80억	58	4.17	1,153	82.83
80억~<90억	41	2.95	1,194	85.78
90억~<100억	20	1.44	1,214	87.21
100억~<150억	78	5.60	1,292	92.82
150억~<200억	34	2.44	1,326	95.26
200억 이상	66	4.74	1,392	100.00

<부표 1- 43> C32 가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45	19.13	245	19.13
10억~<20억	352	27.48	597	46.60
20억~<30억	216	16.86	813	63.47
30억~<40억	124	9.68	937	73.15
40억~<50억	72	5.62	1,009	78.77
50억~<60억	52	4.06	1,061	82.83
60억~<70억	44	3.43	1,105	86.26
70억~<80억	21	1.64	1,126	87.90
80억~<90억	23	1.80	1,149	89.70
90억~<100억	8	0.62	1,157	90.32
100억~<150억	39	3.04	1,196	93.36
150억~<200억	24	1.87	1,220	95.24
200억 이상	61	4.76	1,281	100.00

<부표 1- 44> C33 기타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99	20.90	199	20.90
10억~<20억	265	27.84	464	48.74
20억~<30억	165	17.33	629	66.07
30억~<40억	83	8.72	712	74.79
40억~<50억	59	6.20	771	80.99
50억~<60억	35	3.68	806	84.66
60억~<70억	35	3.68	841	88.34
70억~<80억	7	0.74	848	89.08
80억~<90억	18	1.89	866	90.97
90억~<100억	13	1.37	879	92.33
100억~<150억	36	3.78	915	96.11
150억~<200억	12	1.26	927	97.37
200억 이상	25	2.63	952	100.00

<부표 1- 45> D.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2	0.25	2	0.25
0억~<10억	96	11.93	98	12.17
10억~<20억	47	5.84	145	18.01
20억~<30억	29	3.60	174	21.61
30억~<40억	21	2.61	195	24.22
40억~<50억	12	1.49	207	25.71
50억~<60억	21	2.61	228	28.32
60억~<70억	21	2.61	249	30.93
70억~<80억	21	2.61	270	33.54
80억~<90억	15	1.86	285	35.40
90억~<100억	12	1.49	297	36.89
100억~<150억	62	7.70	359	44.60
150억~<200억	93	11.55	452	56.15
200억 이상	353	43.85	805	100.00

<부표 1- 46> E. 하수·폐기물처리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5	0.17	5	0.17
0억~<10억	994	34.04	999	34.21
10억~<20억	713	24.42	1,712	58.63
20억~<30억	374	12.81	2,086	71.44
30억~<40억	206	7.05	2,292	78.49
40억~<50억	139	4.76	2,431	83.25
50억~<60억	99	3.39	2,530	86.64
60억~<70억	58	1.99	2,588	88.63
70억~<80억	49	1.68	2,637	90.31
80억~<90억	39	1.34	2,676	91.64
90억~<100억	34	1.16	2,710	92.81
100억~<150억	76	2.60	2,786	95.41
150억~<200억	41	1.40	2,827	96.82
200억 이상	93	3.18	2,920	100.00

<부표 1- 47> F. 건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40	0.17	40	0.17
0억~<10억	7,146	30.17	7,186	30.34
10억~<20억	5,161	21.79	12,347	52.13
20억~<30억	2,938	12.40	15,285	64.53
30억~<40억	1,820	7.68	17,105	72.22
40억~<50억	1,253	5.29	18,358	77.51
50억~<60억	885	3.74	19,243	81.24
60억~<70억	621	2.62	19,864	83.86
70억~<80억	479	2.02	20,343	85.89
80억~<90억	380	1.60	20,723	87.49
90억~<100억	330	1.39	21,053	88.88
100억~<150억	1,001	4.23	22,054	93.11
150억~<200억	496	2.09	22,550	95.20
200억 이상	1,136	4.80	23,686	100.00

<부표 1- 48> G. 도·소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73	0.15	73	0.15
0억~<10억	9,101	19.26	9,174	19.42
10억~<20억	6,829	14.45	16,003	33.87
20억~<30억	5,694	12.05	21,697	45.92
30억~<40억	4,517	9.56	26,214	55.48
40억~<50억	3,521	7.45	29,735	62.93
50억~<60억	2,711	5.74	32,446	68.67
60억~<70억	2,081	4.40	34,527	73.07
70억~<80억	1,608	3.40	36,135	76.47
80억~<90억	1,233	2.61	37,368	79.08
90억~<100억	1,021	2.16	38,389	81.24
100억~<150억	3,191	6.75	41,580	88.00
150억~<200억	1,630	3.45	43,210	91.45
200억 이상	4,042	8.55	47,252	100.00

<부표 1- 49> H. 운수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4	0.04	4	0.04
0억~<10억	3,000	31.77	3,004	31.82
10억~<20억	1,916	20.29	4,920	52.11
20억~<30억	969	10.26	5,889	62.37
30억~<40억	704	7.46	6,593	69.83
40억~<50억	544	5.76	7,137	75.59
50억~<60억	368	3.90	7,505	79.49
60억~<70억	268	2.84	7,773	82.32
70억~<80억	222	2.35	7,995	84.67
80억~<90억	162	1.72	8,157	86.39
90억~<100억	150	1.59	8,307	87.98
100억~<150억	404	4.28	8,711	92.26
150억~<200억	245	2.59	8,956	94.85
200억 이상	486	5.15	9,442	100.00

<부표 1- 50> I.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95	0.80	95	0.80
0억~<10억	7,661	64.32	7,756	65.12
10억~<20억	2,290	19.23	10,046	84.34
20억~<30억	756	6.35	10,802	90.69
30억~<40억	338	2.84	11,140	93.53
40억~<50억	200	1.68	11,340	95.21
50억~<60억	124	1.04	11,464	96.25
60억~<70억	99	0.83	11,563	97.08
70억~<80억	59	0.50	11,622	97.57
80억~<90억	38	0.32	11,660	97.89
90억~<100억	33	0.28	11,693	98.17
100억~<150억	98	0.82	11,791	98.99
150억~<200억	53	0.44	11,844	99.44
200억 이상	67	0.56	11,911	100.00

<부표 1- 51> J. 출판·영상·정보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88	0.87	88	0.87
0억~<10억	3,728	36.66	3,816	37.52
10억~<20억	1,959	19.26	5,775	56.78
20억~<30억	922	9.07	6,697	65.85
30억~<40억	586	5.76	7,283	71.61
40억~<50억	410	4.03	7,693	75.64
50억~<60억	276	2.71	7,969	78.36
60억~<70억	223	2.19	8,192	80.55
70억~<80억	192	1.89	8,384	82.44
80억~<90억	114	1.12	8,498	83.56
90억~<100억	136	1.34	8,634	84.90
100억~<150억	443	4.36	9,077	89.25
150억~<200억	272	2.67	9,349	91.93
200억 이상	821	8.07	10,170	100.00

<부표 1- 52> K. 금융·보험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80	1.06	180	1.06
0억~<10억	1,754	10.37	1,934	11.44
10억~<20억	710	4.20	2,644	15.63
20억~<30억	775	4.58	3,419	20.22
30억~<40억	848	5.01	4,267	25.23
40억~<50억	781	4.62	5,048	29.85
50억~<60억	653	3.86	5,701	33.71
60억~<70억	559	3.31	6,260	37.02
70억~<80억	504	2.98	6,764	40.00
80억~<90억	485	2.87	7,249	42.86
90억~<100억	429	2.54	7,678	45.40
100억~<150억	2,394	14.16	10,072	59.56
150억~<200억	2,103	12.43	12,175	71.99
200억 이상	4,737	28.01	16,912	100.00

<부표 1- 53> L.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284	2.08	284	2.08
0억~<10억	9,582	70.13	9,866	72.21
10억~<20억	1,986	14.54	11,852	86.75
20억~<30억	717	5.25	12,569	91.99
30억~<40억	341	2.50	12,910	94.49
40억~<50억	166	1.21	13,076	95.70
50억~<60억	102	0.75	13,178	96.45
60억~<70억	77	0.56	13,255	97.01
70억~<80억	62	0.45	13,317	97.47
80억~<90억	51	0.37	13,368	97.84
90억~<100억	35	0.26	13,403	98.10
100억~<150억	87	0.64	13,490	98.73
150억~<200억	30	0.22	13,520	98.95
200억 이상	143	1.05	13,663	100.00

<부표 1- 54> M. 전문·과학·기술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51	0.34	51	0.34
0억~<10억	7473	49.58	7,524	49.92
10억~<20억	2934	19.47	10,458	69.39
20억~<30억	1232	8.17	11,690	77.56
30억~<40억	747	4.96	12,437	82.52
40억~<50억	493	3.27	12,930	85.79
50억~<60억	327	2.17	13,257	87.96
60억~<70억	235	1.56	13,492	89.52
70억~<80억	185	1.23	13,677	90.74
80억~<90억	153	1.02	13,830	91.76
90억~<100억	124	0.82	13,954	92.58
100억~<150억	353	2.34	14,307	94.92
150억~<200억	191	1.27	14,498	96.19
200억 이상	574	3.81	15,072	100.00

<부표 1- 55> N. 사업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34	0.36	34	0.36
0억~<10억	4,504	47.48	4,538	47.83
10억~<20억	1,710	18.02	6,248	65.86
20억~<30억	974	10.27	7,222	76.13
30억~<40억	538	5.67	7,760	81.80
40억~<50억	363	3.83	8,123	85.62
50억~<60억	244	2.57	8,367	88.19
60억~<70억	202	2.13	8,569	90.32
70억~<80억	155	1.63	8,724	91.96
80억~<90억	111	1.17	8,835	93.13
90억~<100억	101	1.06	8,936	94.19
100억~<150억	267	2.81	9,203	97.01
150억~<200억	122	1.29	9,325	98.29
200억 이상	162	1.71	9,487	100.00

<부표 1- 56> O. 교육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2	0.01	2	0.01
0억~<10억	5,719	31.57	5,721	31.58
10억~<20억	3,525	19.46	9,246	51.03
20억~<30억	2,324	12.83	11,570	63.86
30억~<40억	2,400	13.25	13,970	77.11
40억~<50억	1,664	9.18	15,634	86.29
50억~<60억	917	5.06	16,551	91.35
60억~<70억	569	3.14	17,120	94.49
70억~<80억	388	2.14	17,508	96.63
80억~<90억	230	1.27	17,738	97.90
90억~<100억	144	0.79	17,882	98.70
100억~<150억	162	0.89	18,044	99.59
150억~<200억	37	0.20	18,081	99.80
200억 이상	37	0.20	18,118	100.00

<부표 1- 57> P. 보건·사회복지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8	0.12	8	0.12
0억~<10억	2,063	30.03	2,071	30.15
10억~<20억	1,739	25.31	3,810	55.46
20억~<30억	843	12.27	4,653	67.73
30억~<40억	526	7.66	5,179	75.39
40억~<50억	346	5.04	5,525	80.42
50억~<60억	276	4.02	5,801	84.44
60억~<70억	176	2.56	5,977	87.00
70억~<80억	128	1.86	6,105	88.86
80억~<90억	118	1.72	6,223	90.58
90억~<100억	82	1.19	6,305	91.78
100억~<150억	247	3.60	6,552	95.37
150억~<200억	110	1.60	6,662	96.97
200억 이상	208	3.03	6,870	100.00

<부표 1- 58> Q. 예술·스포츠·여가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72	1.89	72	1.89
0억~<10억	2,251	58.99	2,323	60.88
10억~<20억	563	14.75	2,886	75.63
20억~<30억	223	5.84	3,109	81.47
30억~<40억	151	3.96	3,260	85.43
40억~<50억	70	1.83	3,330	87.26
50억~<60억	45	1.18	3,375	88.44
60억~<70억	51	1.34	3,426	89.78
70억~<80억	44	1.15	3,470	90.93
80억~<90억	25	0.66	3,495	91.59
90억~<100억	32	0.84	3,527	92.43
100억~<150억	114	2.99	3,641	95.41
150억~<200억	59	1.55	3,700	96.96
200억 이상	116	3.04	3,816	100.00

<부표 1- 59> R. 개인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 이하	146	1.13	146	1.13
0억~<10억	8667	67.36	8,813	68.50
10억~<20억	2205	17.14	11,018	85.64
20억~<30억	726	5.64	11,744	91.28
30억~<40억	395	3.07	12,139	94.35
40억~<50억	197	1.53	12,336	95.88
50억~<60억	121	0.94	12,457	96.82
60억~<70억	87	0.68	12,544	97.50
70억~<80억	74	0.58	12,618	98.07
80억~<90억	55	0.43	12,673	98.5
90억~<100억	36	0.28	12,709	98.78
100억~<150억	84	0.65	12,793	99.43
150억~<200억	18	0.14	12,811	99.57
200억 이상	55	0.43	12,866	100.00

(2) 기업 생멸통계

<부표 2- 1>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 업종별 매출액 절사점 : 78%(2014 평균)

(단위 : 원 %)

업종	범주(이하)	누적 백분율
전 체(12년도)	50억	79.44
B 광업	80억	78.84
C 제조업	80억	79.92
10 식료품	100 억	79.84
11 음료	90억	78.49
12 담배		
13 섬유제품: 의복 제외	80억	80.65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90억	78.86
15 가죽, 가방, 신발	80억	78.41
16 목재, 나무제품: 가구 제외	60억	80.94
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70억	78.1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0억	78.72
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160 억	79.10
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10 억	78.79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230 억	78.25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80억	80.19
23 비금속 광물제품	90억	79.06
24 1차 금속	150 억	78.72
25 금속가공제품: 기계, 가구 제외	60억	79.1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90억	79.0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60억	78.19
28 전기장비	80억	78.48
29 기타 기계, 장비	80억	80.88
30 자동차, 트레일러	130 억	79.60
31 기타 운송장비	70억	81.16
32 가구	50억	79.40
33 기타 제품	30억	81.12

D 전기·가스·수도사업	110 억	79.27
E 하수·폐기물 처리업	40억	81.32
F 건설업	80억	81.33
G 도·소매업	70억	79.70
H 운수업	80억	80.47
I 숙박·음식점업	15억	86.21
J 출판·영상·정보	30억	79.09
K 금융·보험업	90억	79.50
L 부동산·임대업	40억	80.46
M 전문·과학·기술	15억	78.25
N 사업서비스업	25억	79.32
P 교육서비스업	15억	83.95
Q 보건·사회복지	10억	80.12
R 예술·스포츠·여가	30억	80.60
S 개인서비스업	15억	85.16

기초자료 : 생멸통계

<부표 2- 2> 소기업 업종별 적용기준

(단위: 명)

개편 (매출액)	업종	현행기준 (미만)
100 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상시근로자 10명
70억원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금융·보험업, 농업·임업 및 어업, 도 소매업,	상시근로자 10명
40억원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상시근로자 10명
20억원	출판·영상·정보 서비스, 사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상시근로자 5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상시근로자 10명
10억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상시근로자 50명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명

기초자료 : 생멸통계

<부표 2- 3>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 (5 범주)

(단위: 개)

개편 (매출액)	업종		Net 소기업 변경효과 -1,604
100 억원	증가기업	67	67
	감소기업	-	
70 억원	증가기업	11,030	2,442
	감소기업	-8,588	
40 억원	증가기업	2,795	2,795
	감소기업	-	
20 억원	증가기업	581	-5,941
	감소기업	-6,522	
10 억원	증가기업	4,171	-967
	감소기업	-5,138	

기초자료 : 생멸통계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 기초자료 : 생멸통계

(단위 : 개 %)

<부표 2- 4> B. 광업

구분	매출액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250	72.46	1,250	72.46
10억~<20 억	130	7.54	1,380	80.00
20억~<30 억	83	4.81	1,463	84.81
30억~<40 억	52	3.01	1,515	87.83
40억~<50 억	48	2.78	1,563	90.61
50억~<60 억	32	1.86	1,595	92.46
60억~<70 억	22	1.28	1,617	93.74
70억~<80 억	19	1.10	1,636	94.84
80억~<90 억	13	0.75	1,649	95.59
90억~<100 억	14	0.81	1,663	96.41
100억~<150 억	33	1.91	1,696	98.32
150억~<200 억	7	0.41	1,703	98.72
200 억 이상	22	1.28	1,725	100.00

<부표 2- 5> C. 제조업

구분	매출액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372,013	79.85	372,013	79.85
10억~<20 억	39,330	8.44	411,343	88.29
20억~<30 억	15,222	3.27	426,565	91.56
30억~<40 억	8,439	1.81	435,004	93.37
40억~<50 억	5,618	1.21	440,622	94.58
50억~<60 억	3,997	0.86	444,619	95.43
60억~<70 억	2,897	0.62	447,516	96.06
70억~<80 억	2,233	0.48	449,749	96.54
80억~<90 억	1,760	0.38	451,509	96.91
90억~<100 억	1,446	0.31	452,955	97.22
100억~<150 억	4,313	0.93	457,268	98.15
150억~<200 억	2,075	0.45	459,343	98.59
200 억 이상	6,548	1.41	465,891	100.00

<부표 2- 6> C10 식료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46,866	89.64	46,866	89.64
10억~<20 억	2,000	3.83	48,866	93.46
20억~<30 억	904	1.73	49,770	95.19
30억~<40 억	504	0.96	50,274	96.16
40억~<50 억	345	0.66	50,619	96.82
50억~<60 억	240	0.46	50,859	97.28
60억~<70 억	210	0.40	51,069	97.68
70억~<80 억	166	0.32	51,235	98.00
80억~<90 억	115	0.22	51,350	98.22
90억~<100 억	105	0.20	51,455	98.42
100억~<150 억	274	0.52	51,729	98.94
150억~<200 억	152	0.29	51,881	99.23
200 억 이상	402	0.77	52,283	100.00

<부표 2- 7> C11 음료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268	87.75	1,268	87.75
10억~<20 억	70	4.84	1,338	92.60
20억~<30 억	12	0.83	1,350	93.43
30억~<40 억	12	0.83	1,362	94.26
40억~<50 억	7	0.48	1,369	94.74
50억~<60 억	5	0.35	1,374	95.09
60억~<70 억	6	0.42	1,380	95.50
70억~<80 억	5	0.35	1,385	95.85
80억~<90 억	6	0.42	1,391	96.26
90억~<100 억	5	0.35	1,396	96.61
100억~<150 억	11	0.76	1,407	97.37
150억~<200 억	8	0.55	1,415	97.92
200 억 이상	30	2.08	1,445	100.00

<부표 2- 8> C12 담배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268	87.75	1,268	87.75
10억~<200 억	70	4.84	1,338	92.60
200 억 이상	12	0.83	1,350	93.43

<부표 2- 9>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1,778	81.33	21,778	81.33
10억~<20 억	2,171	8.11	23,949	89.44
20억~<30 억	873	3.26	24,822	92.70
30억~<40 억	441	1.65	25,263	94.35
40억~<50 억	289	1.08	25,552	95.43
50억~<60 억	235	0.88	25,787	96.31
60억~<70 억	167	0.62	25,954	96.93
70억~<80 억	123	0.46	26,077	97.39
80억~<90 억	103	0.38	26,180	97.77
90억~<100 억	82	0.31	26,262	98.08
100억~<150 억	219	0.82	26,481	98.90
150억~<200 억	108	0.40	26,589	99.30
200 억 이상	187	0.70	26,776	100.00

<부표 2- 10> C14 의복,의복액세서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8,945	87.34	18,945	87.34
10억~<20 억	1,124	5.18	20,069	92.52
20억~<30 억	447	2.06	20,516	94.58
30억~<40 억	249	1.15	20,765	95.73
40억~<50 억	170	0.78	20,935	96.51
50억~<60 억	113	0.52	21,048	97.03
60억~<70 억	93	0.43	21,141	97.46
70억~<80 억	58	0.27	21,199	97.73
80억~<90 억	50	0.23	21,249	97.96
90억~<100 억	36	0.17	21,285	98.12
100억~<150 억	125	0.58	21,410	98.70
150억~<200 억	61	0.28	21,471	98.98
200 억 이상	221	1.02	21,692	100.00

<부표 2- 11> C15 가죽,가방,신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177	82.40	5,177	82.40
10억~<20 억	492	7.83	5,669	90.23
20억~<30 억	169	2.69	5,838	92.92
30억~<40 억	126	2.01	5,964	94.92
40억~<50 억	66	1.05	6,030	95.97
50억~<60 억	42	0.67	6,072	96.64
60억~<70 억	32	0.51	6,104	97.15
70억~<80 억	18	0.29	6,122	97.44
80억~<90 억	18	0.29	6,140	97.72
90억~<100 억	17	0.27	6,157	97.99
100억~<150 억	44	0.70	6,201	98.69
150억~<200 억	17	0.27	6,218	98.97
200 억 이상	65	1.03	6,283	100.00

<부표 2- 12> C16 목재,나무제품,가구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949	80.97	5,949	80.97
10억~<20 억	683	9.30	6,632	90.27
20억~<30 억	238	3.24	6,870	93.51
30억~<40 억	124	1.69	6,994	95.20
40억~<50 억	100	1.36	7,094	96.56
50억~<60 억	51	0.69	7,145	97.25
60억~<70 억	45	0.61	7,190	97.86
70억~<80 억	26	0.35	7,216	98.22
80억~<90 억	24	0.33	7,240	98.54
90억~<100 억	13	0.18	7,253	98.72
100억~<150 억	44	0.60	7,297	99.32
150억~<200 억	15	0.20	7,312	99.52
200 억 이상	35	0.48	7,347	100.00

<부표 2- 13>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442	68.45	5,442	68.45
10억~<20억	1,087	13.67	6,529	82.13
20억~<30억	451	5.67	6,980	87.80
30억~<40억	229	2.88	7,209	90.68
40억~<50억	146	1.84	7,355	92.52
50억~<60억	95	1.19	7,450	93.71
60억~<70억	79	0.99	7,529	94.70
70억~<80억	58	0.73	7,587	95.43
80억~<90억	44	0.55	7,631	95.99
90억~<100억	33	0.42	7,664	96.40
100억~<150억	100	1.26	7,764	97.66
150억~<200억	48	0.60	7,812	98.26
200억 이상	138	1.74	7,950	100.00

<부표 2- 1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1,439	91.26	21,439	91.26
10억~<20억	1,177	5.01	22,616	96.27
20억~<30억	353	1.50	22,969	97.77
30억~<40억	152	0.65	23,121	98.42
40억~<50억	81	0.34	23,202	98.76
50억~<60억	66	0.28	23,268	99.04
60억~<70억	46	0.20	23,314	99.24
70억~<80억	25	0.11	23,339	99.34
80억~<90억	27	0.11	23,366	99.46
90억~<100억	7	0.03	23,373	99.49
100억~<150억	57	0.24	23,430	99.73
150억~<200억	24	0.10	23,454	99.83
200억 이상	39	0.17	23,493	100.00

<부표 2- 15>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44	40.68	144	40.68
10억~<20억	43	12.15	187	52.82
20억~<30억	18	5.08	205	57.91
30억~<40억	19	5.37	224	63.28
40억~<50억	21	5.93	245	69.21
50억~<60억	9	2.54	254	71.75
60억~<70억	11	3.11	265	74.86
70억~<80억	9	2.54	274	77.40
80억~<90억	7	1.98	281	79.38
90억~<100억	2	0.56	283	79.94
100억~<150억	25	7.06	308	87.01
150억~<200억	14	3.95	322	90.96
200억 이상	32	9.04	354	100.00

<부표 2- 16>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7,374	63.73	7,374	63.73
10억~<20억	1,465	12.66	8,839	76.40
20억~<30억	643	5.56	9,482	81.95
30억~<40억	386	3.34	9,868	85.29
40억~<50억	292	2.52	10,160	87.81
50억~<60억	188	1.62	10,348	89.44
60억~<70억	149	1.29	10,497	90.73
70억~<80억	123	1.06	10,620	91.79
80억~<90억	91	0.79	10,711	92.58
90억~<100억	65	0.56	10,776	93.14
100억~<150억	224	1.94	11,000	95.07
150억~<200억	111	0.96	11,111	96.03
200억 이상	459	3.97	11,570	100.00

<부표 2- 17>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43	54.85	543	54.85
10억~<20억	96	9.70	639	64.55
20억~<30억	38	3.84	677	68.38
30억~<40억	38	3.84	715	72.22
40억~<50억	17	1.72	732	73.94
50억~<60억	20	2.02	752	75.96
60억~<70억	12	1.21	764	77.17
70억~<80억	15	1.52	779	78.69
80억~<90억	5	0.51	784	79.19
90억~<100억	6	0.61	790	79.80
100억~<150억	37	3.74	827	83.54
150억~<200억	17	1.72	844	85.25
200억 이상	146	14.75	990	100.00

<부표 2- 18>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6,384	67.99	16,384	67.99
10억~<20억	3,132	13.00	19,516	80.98
20억~<30억	1,311	5.44	20,827	86.42
30억~<40억	764	3.17	21,591	89.59
40억~<50억	458	1.90	22,049	91.49
50억~<60억	355	1.47	22,404	92.97
60억~<70억	251	1.04	22,655	94.01
70억~<80억	195	0.81	22,850	94.82
80억~<90억	168	0.70	23,018	95.51
90억~<100억	130	0.54	23,148	96.05
100억~<150억	369	1.53	23,517	97.58
150억~<200억	155	0.64	23,672	98.23
200억 이상	427	1.77	24,099	100.00

<부표 2- 19> C23 비금속광물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8,599	71.98	8,599	71.98
10억~<20억	1,017	8.51	9,616	80.50
20억~<30억	557	4.66	10,173	85.16
30억~<40억	346	2.90	10,519	88.05
40억~<50억	265	2.22	10,784	90.27
50억~<60억	209	1.75	10,993	92.02
60억~<70억	140	1.17	11,133	93.19
70억~<80억	137	1.15	11,270	94.34
80억~<90억	88	0.74	11,358	95.08
90억~<100억	91	0.76	11,449	95.84
100억~<150억	199	1.67	11,648	97.51
150억~<200억	97	0.81	11,745	98.32
200억 이상	201	1.68	11,946	100.00

<부표 2- 20> C24 1 차금속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4,749	54.84	4,749	54.84
10억~<20억	1,176	13.58	5,925	68.42
20억~<30억	530	6.12	6,455	74.54
30억~<40억	362	4.18	6,817	78.72
40억~<50억	223	2.58	7,040	81.29
50억~<60억	181	2.09	7,221	83.38
60억~<70억	146	1.69	7,367	85.07
70억~<80억	93	1.07	7,460	86.14
80억~<90억	93	1.07	7,553	87.22
90억~<100억	76	0.88	7,629	88.09
100억~<150억	303	3.50	7,932	91.59
150억~<200억	140	1.62	8,072	93.21
200억 이상	588	6.79	8,660	100.00

<부표 2- 21> C25 금속가공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9,294	80.66	59,294	80.66
10억~<20 억	7,085	9.64	66,379	90.30
20억~<30 억	2,306	3.14	68,685	93.44
30억~<40 억	1,208	1.64	69,893	95.08
40억~<50 억	793	1.08	70,686	96.16
50억~<60 억	538	0.73	71,224	96.89
60억~<70 억	380	0.52	71,604	97.41
70억~<80 억	293	0.40	71,897	97.81
80억~<90 억	199	0.27	72,096	98.08
90억~<100 억	170	0.23	72,266	98.31
100억~<150 억	511	0.70	72,777	99.01
150억~<200 억	223	0.30	73,000	99.31
200 억 이상	507	0.69	73,507	100.00

<부표 2- 22>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4,659	71.53	14,659	71.53
10억~<20억	2,164	10.56	16,823	82.09
20억~<30억	914	4.46	17,737	86.55
30억~<40억	496	2.42	18,233	88.97
40억~<50억	304	1.48	18,537	90.45
50억~<60억	245	1.20	18,782	91.65
60억~<70억	179	0.87	18,961	92.52
70억~<80억	136	0.66	19,097	93.18
80억~<90억	107	0.52	19,204	93.71
90억~<100억	96	0.47	19,300	94.17
100억~<150억	297	1.45	19,597	95.62
150억~<200억	179	0.87	19,776	96.50
200억 이상	718	3.50	20,494	100.00

<부표 2- 23>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0,807	79.35	10,807	79.35
10억~<20억	1,237	9.08	12,044	88.43
20억~<30억	454	3.33	12,498	91.76
30억~<40억	250	1.84	12,748	93.60
40억~<50억	181	1.33	12,929	94.93
50억~<60억	117	0.86	13,046	95.79
60억~<70억	95	0.70	13,141	96.48
70억~<80억	66	0.48	13,207	96.97
80억~<90억	48	0.35	13,255	97.32
90억~<100억	43	0.32	13,298	97.64
100억~<150억	104	0.76	13,402	98.40
150억~<200억	56	0.41	13,458	98.81
200억 이상	162	1.19	13,620	100.00

<부표 2- 24> C28 전기,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9,234	76.84	19,234	76.84
10억~<20억	2,450	9.79	21,684	86.63
20억~<30억	960	3.84	22,644	90.46
30억~<40억	516	2.06	23,160	92.52
40억~<50억	339	1.35	23,499	93.88
50억~<60억	229	0.91	23,728	94.79
60억~<70억	173	0.69	23,901	95.48
70억~<80억	142	0.57	24,043	96.05
80억~<90억	105	0.42	24,148	96.47
90억~<100억	71	0.28	24,219	96.75
100억~<150억	265	1.06	24,484	97.81
150억~<200억	125	0.50	24,609	98.31
200억 이상	423	1.69	25,032	100.00

<부표 2- 25> C29 기타기계,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41,877	75.10	41,877	75.10
10억~<20억	6,096	10.93	47,973	86.03
20억~<30억	2,387	4.28	50,360	90.32
30억~<40억	1,227	2.20	51,587	92.52
40억~<50억	842	1.51	52,429	94.03
50억~<60억	607	1.09	53,036	95.11
60억~<70억	379	0.68	53,415	95.79
70억~<80억	304	0.55	53,719	96.34
80억~<90억	256	0.46	53,975	96.80
90억~<100억	226	0.41	54,201	97.20
100억~<150억	574	1.03	54,775	98.23
150억~<200억	268	0.48	55,043	98.71
200억 이상	717	1.29	55,760	100.00

<부표 2- 26> C30 자동차,트레일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7,046	60.60	7,046	60.60
10억~<20억	1,377	11.84	8,423	72.44
20억~<30억	600	5.16	9,023	77.60
30억~<40억	394	3.39	9,417	80.99
40억~<50억	302	2.60	9,719	83.59
50억~<60억	182	1.57	9,901	85.16
60억~<70억	130	1.12	10,031	86.27
70억~<80억	106	0.91	10,137	87.19
80억~<90억	107	0.92	10,244	88.11
90억~<100억	89	0.77	10,333	88.87
100억~<150억	321	2.76	10,654	91.63
150억~<200억	176	1.51	10,830	93.15
200억 이상	797	6.85	11,627	100.00

<부표 2- 27> C31 기타 운송장비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4,288	65.99	4,288	65.99
10억~<20억	801	12.33	5,089	78.32
20억~<30억	344	5.29	5,433	83.61
30억~<40억	251	3.86	5,684	87.47
40억~<50억	138	2.12	5,822	89.60
50억~<60억	123	1.89	5,945	91.49
60억~<70억	95	1.46	6,040	92.95
70억~<80억	78	1.20	6,118	94.15
80억~<90억	44	0.68	6,162	94.83
90억~<100억	46	0.71	6,208	95.54
100억~<150억	112	1.72	6,320	97.26
150억~<200억	42	0.65	6,362	97.91
200억 이상	136	2.09	6,498	100.00

<부표 2- 28> C32 가구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1,691	87.44	11,691	87.44
10억~<20억	882	6.60	12,573	94.03
20억~<30억	266	1.99	12,839	96.02
30억~<40억	132	0.99	12,971	97.01
40억~<50억	99	0.74	13,070	97.75
50억~<60억	61	0.46	13,131	98.21
60억~<70억	43	0.32	13,174	98.53
70억~<80억	31	0.23	13,205	98.76
80억~<90억	24	0.18	13,229	98.94
90억~<100억	14	0.10	13,243	99.04
100억~<150억	53	0.40	13,296	99.44
150억~<200억	22	0.16	13,318	99.60
200억 이상	53	0.40	13,371	100.00

<부표 2- 29> C33 기타제품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38,458	93.60	38,458	93.60
10억~<20억	1,505	3.66	39,963	97.26
20억~<30억	447	1.09	40,410	98.35
30억~<40억	213	0.52	40,623	98.87
40억~<50억	140	0.34	40,763	99.21
50억~<60억	86	0.21	40,849	99.42
60억~<70억	36	0.09	40,885	99.51
70억~<80억	26	0.06	40,911	99.57
80억~<90억	31	0.08	40,942	99.64
90억~<100억	23	0.06	40,965	99.70
100억~<150억	45	0.11	41,010	99.81
150억~<200억	16	0.04	41,026	99.85
200억 이상	62	0.15	41,088	100.00

<부표 2- 30> D.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844	93.52	2,844	93.52
10억~<20억	62	2.04	2,906	95.56
20억~<30억	19	0.62	2,925	96.19
30억~<40억	7	0.23	2,932	96.42
40억~<50억	4	0.13	2,936	96.55
50억~<60억	4	0.13	2,940	96.68
60억~<70억	4	0.13	2,944	96.81
70억~<80억	1	0.03	2,945	96.84
80억~<90억	4	0.13	2,949	96.97
90억~<100억	1	0.03	2,950	97.01
100억~<150억	13	0.43	2,963	97.44
150억~<200억	4	0.13	2,967	97.57
200억 이상	74	2.43	3,041	100.00

<부표 2- 31> E. 하수·폐기물 처리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711	68.95	5,711	68.95
10억~<20억	1,106	13.35	6,817	82.30
20억~<30억	484	5.84	7,301	88.14
30억~<40억	262	3.16	7,563	91.31
40억~<50억	185	2.23	7,748	93.54
50억~<60억	78	0.94	7,826	94.48
60억~<70억	79	0.95	7,905	95.44
70억~<80억	65	0.78	7,970	96.22
80억~<90억	41	0.49	8,011	96.72
90억~<100억	31	0.37	8,042	97.09
100억~<150억	85	1.03	8,127	98.12
150억~<200억	53	0.64	8,180	98.76
200억 이상	103	1.24	8,283	100.00

<부표 2- 32> F. 건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305,354	89.99	305,354	89.99
10억~<20억	15,294	4.51	320,648	94.50
20억~<30억	5,899	1.74	326,547	96.24
30억~<40억	3,342	0.98	329,889	97.22
40억~<50억	2,024	0.60	331,913	97.82
50억~<60억	1,369	0.40	333,282	98.22
60억~<70억	948	0.28	334,230	98.50
70억~<80억	727	0.21	334,957	98.72
80억~<90억	569	0.17	335,526	98.88
90억~<100억	441	0.13	335,967	99.01
100억~<150억	1,285	0.38	337,252	99.39
150억~<200억	576	0.17	337,828	99.56
200억 이상	1,482	0.44	339,310	100.00

<부표 2- 33> G. 도·소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183,950	89.52	1,183,950	89.52
10억~<20억	65,942	4.99	1,249,892	94.50
20억~<30억	27,197	2.06	1,277,089	96.56
30억~<40억	12,099	0.91	1,289,188	97.48
40억~<50억	7,702	0.58	1,296,890	98.06
50억~<60억	5,143	0.39	1,302,033	98.45
60억~<70억	3,744	0.28	1,305,777	98.73
70억~<80억	2,624	0.20	1,308,401	98.93
80억~<90억	2,043	0.15	1,310,444	99.08
90억~<100억	1,559	0.12	1,312,003	99.20
100억~<150억	4,292	0.32	1,316,295	99.53
150억~<200억	1,918	0.15	1,318,213	99.67
200억 이상	4,355	0.33	1,322,568	100.00

<부표 2- 34> H. 운수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34,788	97.86	534,788	97.86
10억~<20억	4,798	0.88	539,586	98.74
20억~<30억	2,079	0.38	541,665	99.12
30억~<40억	1,206	0.22	542,871	99.34
40억~<50억	776	0.14	543,647	99.48
50억~<60억	487	0.09	544,134	99.57
60억~<70억	370	0.07	544,504	99.64
70억~<80억	269	0.05	544,773	99.69
80억~<90억	193	0.04	544,966	99.72
90억~<100억	180	0.03	545,146	99.76
100억~<150억	484	0.09	545,630	99.84
150억~<200억	253	0.05	545,883	99.89
200억 이상	600	0.11	546,483	100.00

<부표 2- 35> I.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754,270	99.20	754,270	99.20
10억~<20억	4,546	0.60	758,816	99.79
20억~<30억	751	0.10	759,567	99.89
30억~<40억	275	0.04	759,842	99.93
40억~<50억	108	0.01	759,950	99.94
50억~<60억	67	0.01	760,017	99.95
60억~<70억	54	0.01	760,071	99.96
70억~<80억	46	0.01	760,117	99.97
80억~<90억	24	0.00	760,141	99.97
90억~<100억	17	0.00	760,158	99.97
100억~<150억	61	0.01	760,219	99.98
150억~<200억	29	0.00	760,248	99.98
200억 이상	130	0.02	760,378	100.00

<부표 2- 36> J. 출판·영상·정보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51,688	86.89	51,688	86.89
10억~<20억	3,118	5.24	54,806	92.13
20억~<30억	1,311	2.20	56,117	94.34
30억~<40억	775	1.30	56,892	95.64
40억~<50억	458	0.77	57,350	96.41
50억~<60억	355	0.60	57,705	97.01
60억~<70억	243	0.41	57,948	97.42
70억~<80억	177	0.30	58,125	97.71
80억~<90억	162	0.27	58,287	97.99
90억~<100억	108	0.18	58,395	98.17
100억~<150억	360	0.61	58,755	98.77
150억~<200억	179	0.30	58,934	99.07
200억 이상	551	0.93	59,485	100.00

<부표 2- 37> K. 금융·보험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7,438	86.96	17,438	86.96
10억~<20억	811	4.04	18,249	91.01
20억~<30억	397	1.98	18,646	92.99
30억~<40억	195	0.97	18,841	93.96
40억~<50억	141	0.70	18,982	94.66
50억~<60억	106	0.53	19,088	95.19
60억~<70억	81	0.40	19,169	95.60
70억~<80억	79	0.39	19,248	95.99
80억~<90억	58	0.29	19,306	96.28
90억~<100억	43	0.21	19,349	96.49
100억~<150억	151	0.75	19,500	97.25
150억~<200억	82	0.41	19,582	97.66
200억 이상	470	2.34	20,052	100.00

<부표 2- 38> L.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078,418	99.11	1,078,418	99.11
10억~<20억	5,189	0.48	1,083,607	99.59
20억~<30억	1,685	0.15	1,085,292	99.74
30억~<40억	728	0.07	1,086,020	99.81
40억~<50억	431	0.04	1,086,451	99.85
50억~<60억	265	0.02	1,086,716	99.87
60억~<70억	192	0.02	1,086,908	99.89
70억~<80억	151	0.01	1,087,059	99.90
80억~<90억	123	0.01	1,087,182	99.91
90억~<100억	93	0.01	1,087,275	99.92
100억~<150억	266	0.02	1,087,541	99.95
150억~<200억	124	0.01	1,087,665	99.96
200억 이상	457	0.04	1,088,122	100.00

<부표 2- 39> M. 전문·과학·기술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08,713	92.04	108,713	92.04
10억~<20억	4,324	3.66	113,037	95.70
20억~<30억	1,712	1.45	114,749	97.15
30억~<40억	842	0.71	115,591	97.86
40억~<50억	572	0.48	116,163	98.34
50억~<60억	333	0.28	116,496	98.63
60억~<70억	237	0.20	116,733	98.83
70억~<80억	201	0.17	116,934	99.00
80억~<90억	150	0.13	117,084	99.12
90억~<100억	114	0.10	117,198	99.22
100억~<150억	339	0.29	117,537	99.51
150억~<200억	167	0.14	117,704	99.65
200억 이상	414	0.35	118,118	100.00

<부표 2- 40> N. 사업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64,354	89.71	64,354	89.71
10억~<20억	3,210	4.47	67,564	94.19
20억~<30억	1,306	1.82	68,870	96.01
30억~<40억	756	1.05	69,626	97.06
40억~<50억	437	0.61	70,063	97.67
50억~<60억	287	0.40	70,350	98.07
60억~<70억	196	0.27	70,546	98.35
70억~<80억	154	0.21	70,700	98.56
80억~<90억	123	0.17	70,823	98.73
90억~<100억	99	0.14	70,922	98.87
100억~<150억	301	0.42	71,223	99.29
150억~<200억	148	0.21	71,371	99.50
200억 이상	361	0.50	71,732	100.00

<부표 2- 41> O. 교육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27,693	98.75	127,693	98.75
10억~<20억	938	0.73	128,631	99.48
20억~<30억	287	0.22	128,918	99.70
30억~<40억	119	0.09	129,037	99.79
40억~<50억	76	0.06	129,113	99.85
50억~<60억	35	0.03	129,148	99.88
60억~<70억	37	0.03	129,185	99.91
70억~<80억	13	0.01	129,198	99.92
80억~<90억	13	0.01	129,211	99.93
90억~<100억	10	0.01	129,221	99.93
100억~<150억	34	0.03	129,255	99.96
150억~<200억	13	0.01	129,268	99.97
200억 이상	39	0.03	129,307	100.00

<부표 2- 42> P. 보건·사회복지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62,092	90.05	62,092	90.05
10억~<20억	4,197	6.09	66,289	96.14
20억~<30억	1,031	1.50	67,320	97.63
30억~<40억	470	0.68	67,790	98.32
40억~<50억	280	0.41	68,070	98.72
50억~<60억	200	0.29	68,270	99.01
60억~<70억	144	0.21	68,414	99.22
70억~<80억	98	0.14	68,512	99.36
80억~<90억	79	0.11	68,591	99.48
90억~<100억	58	0.08	68,649	99.56
100억~<150억	151	0.22	68,800	99.78
150억~<200억	72	0.10	68,872	99.89
200억 이상	79	0.11	68,951	100.00

<부표 2- 43> Q. 예술·스포츠·여가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111,504	98.94	111,504	98.94
10억~<20억	515	0.46	112,019	99.39
20억~<30억	165	0.15	112,184	99.54
30억~<40억	95	0.08	112,279	99.62
40억~<50억	65	0.06	112,344	99.68
50억~<60억	43	0.04	112,387	99.72
60억~<70억	41	0.04	112,428	99.76
70억~<80억	28	0.02	112,456	99.78
80억~<90억	34	0.03	112,490	99.81
90억~<100억	29	0.03	112,519	99.84
100억~<150억	81	0.07	112,600	99.91
150억~<200억	39	0.03	112,639	99.94
200억 이상	65	0.06	112,704	100.00

<부표 2- 44> R. 개인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기업 수	백분율	누적기업수	누적백분율
0억~<10억	259,487	98.52	259,487	98.52
10억~<20억	2,475	0.94	261,962	99.46
20억~<30억	665	0.25	262,627	99.71
30억~<40억	305	0.12	262,932	99.83
40억~<50억	126	0.05	263,058	99.87
50억~<60억	77	0.03	263,135	99.90
60억~<70억	47	0.02	263,182	99.92
70억~<80억	41	0.02	263,223	99.94
80억~<90억	37	0.01	263,260	99.95
90억~<100억	25	0.01	263,285	99.96
100억~<150억	58	0.02	263,343	99.98
150억~<200억	19	0.01	263,362	99.99
200억 이상	26	0.01	263,388	100.00

(3) 소기업 업종별 근로자 분포

현행(2014년) 소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분표

* 기초자료 : 통계청

(단위 : 개 %)

<부표 3 -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54	3.1	54	3.1
1~1	452	26.0	506	29.1
2~2	259	14.9	765	44.0
3~3	246	14.2	1,011	58.2
4~5	328	18.9	1,339	77.0
6~7	195	11.2	1,534	88.3
8~9	204	11.7	1,738	100.0

<부표 3 - 2> B. 광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672	38.6	672	38.6
3~5	587	33.7	1,259	72.4
6~9	135	7.8	1,394	80.1
10~19	196	11.3	1,590	91.4
20~29	93	5.3	1,683	96.7
30~49	57	3.3	1,740	100.0

<부표 3 - 3> C10 식료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40,005	76.4	40,005	76.4
3~5	6,446	12.3	46,451	88.7
6~9	2,627	5.0	49,078	93.7
10~19	1,914	3.7	50,992	97.4
20~29	712	1.4	51,704	98.7
30~49	662	1.3	52,366	100.0

<부표 3 - 4> C11 음료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466	42.2	466	42.2
3~5	315	28.5	781	70.7
6~9	141	12.8	922	83.4
10~19	100	9.1	1,022	92.5
20~29	44	4.0	1,066	96.5
30~49	39	3.5	1,105	100.0

<부표 3 - 5> C12 담배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1	25.0	1	25.0
10~19	1	25.0	2	50.0
30~49	2	50.0	4	100.0

<부표 3 - 6> C13 섬유제품 : 의복제외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8,970	46.9	8,970	46.9
3~5	5,249	27.4	14,219	74.3
6~9	2,133	11.1	16,352	85.4
10~19	1,731	9.0	18,083	94.5
20~29	591	3.1	18,674	97.6
30~49	469	2.5	19,143	100.0

<부표 3 - 7>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2	10,603	47.8	10,603	47.8
3~5	6,227	28.1	16,830	75.9
6~9	2,842	12.8	19,672	88.7
10~19	1,710	7.7	21,382	96.4
20~29	498	2.3	21,880	98.7
30~49	297	1.3	22,177	100.0

<부표 3 - 8> C15 가죽,가방,신발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491	35.2	1,491	35.2
3 ~ 5	1,407	33.3	2,898	68.5
6 ~ 9	650	15.4	3,548	83.9
10 ~ 19	449	10.6	3,997	94.5
20 ~ 29	142	3.4	4,139	97.8
30 ~ 49	92	2.2	4,231	100.0

<부표 3 - 9> C16 목재,나무제품,가구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2,832	47.5	2,832	47.5
3 ~ 5	1,540	25.8	4,372	73.4
6 ~ 9	840	14.1	5,212	87.5
10 ~ 19	559	9.4	5,771	96.8
20 ~ 29	112	1.9	5,883	98.7
30 ~ 49	77	1.3	5,960	100.0

<부표 3 - 10> C17 펄프,종이, 종이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242	23.8	1,242	23.8
3 ~ 5	1,655	31.7	2,897	55.5
6 ~ 9	1,000	19.2	3,897	74.6
10 ~ 19	804	15.4	4,701	90.0
20 ~ 29	309	5.9	5,010	95.9
30 ~ 49	212	4.1	5,222	100.0

<부표 3 - 11>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9,828	60.7	9,828	60.7
3 ~ 5	3,902	24.1	13,730	84.8
6 ~ 9	1,179	7.3	14,909	92.1
10 ~ 19	890	5.5	15,799	97.6
20 ~ 29	256	1.6	16,055	99.2
30 ~ 49	137	0.9	16,192	100.0

<부표 3 - 12>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26	9.7	26	9.7
3 ~ 5	56	20.8	82	30.5
6 ~ 9	60	22.3	142	52.8
10 ~ 19	78	29.0	220	81.8
20 ~ 29	25	9.3	245	91.1
30 ~ 49	24	8.9	269	100.0

<부표 3 - 13>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 의약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377	20.1	1,377	20.1
3 ~ 5	2,045	29.9	3,422	50.0
6 ~ 9	1,411	20.6	4,833	70.6
10 ~ 19	1,213	17.7	6,046	88.4
20 ~ 29	431	6.3	6,477	94.7
30 ~ 49	365	5.3	6,842	100.0

<부표 3 - 14> C21 의료용물질, 의약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73	26.2	173	26.2
3 ~ 5	131	19.9	304	46.1
6 ~ 9	105	15.9	409	62.0
10 ~ 19	105	15.9	514	77.9
20 ~ 29	63	9.6	577	87.4
30 ~ 49	83	12.6	660	100.0

<부표 3 - 15>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3,749	23.3	3,749	23.3
3 ~ 5	4,966	30.8	8,715	54.0
6 ~ 9	2,956	18.3	11,671	72.4
10 ~ 19	2,593	16.1	14,264	88.4
20 ~ 29	1,061	6.6	15,325	95.0
30 ~ 49	803	5.0	16,128	100.0

<부표 3 - 16> C23 비금속광물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3,152	35.0	3,152	35.0
3 ~ 5	2,297	25.5	5,449	60.6
6 ~ 9	1,394	15.5	6,843	76.0
10 ~ 19	1,375	15.3	8,218	91.3
20 ~ 29	454	5.1	8,672	96.4
30 ~ 49	327	3.6	8,999	100.0

<부표 3 - 17> C24 1 차금속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217	20.4	1,217	20.4
3 ~ 5	1,527	25.6	2,744	46.1
6 ~ 9	1,077	18.1	3,821	64.2
10 ~ 19	1,175	19.7	4,996	83.9
20 ~ 29	473	7.9	5,469	91.8
30 ~ 49	486	8.2	5,955	100.0

<부표 3 - 18> C25 금속가공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24,538	45.7	24,538	45.7
3 ~ 5	14,526	27.0	39,064	72.7
6 ~ 9	6,667	12.4	45,731	85.1
10 ~ 19	5,066	9.4	50,797	94.5
20 ~ 29	1,693	3.2	52,490	97.7
30 ~ 49	1,240	2.3	53,730	100.0

<부표 3 - 1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712	19.8	1,712	19.8
3 ~ 5	2,282	26.4	3,994	46.2
6 ~ 9	1,677	19.4	5,671	65.7
10 ~ 19	1,606	18.6	7,277	84.3
20 ~ 29	703	8.1	7,980	92.4
30 ~ 49	657	7.6	8,637	100.0

<부표 3 - 2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2,087	27.5	2,087	27.5
3 ~ 5	2,441	32.2	4,528	59.7
6 ~ 9	1,329	17.5	5,857	77.3
10 ~ 19	1,053	13.9	6,910	91.2
20 ~ 29	373	4.9	7,283	96.1
30 ~ 49	297	3.9	7,580	100.0

<부표 3 - 21> C28 전기장비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5,769	36.3	5,769	36.3
3 ~ 5	4,306	27.1	10,075	63.4
6 ~ 9	2,532	15.9	12,607	79.4
10 ~ 19	1,973	12.4	14,580	91.8
20 ~ 29	771	4.9	15,351	96.6
30 ~ 49	537	3.4	15,888	100.0

<부표 3 - 22> C29 기타기계,장비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0,053	31.7	10,053	31.7
3 ~ 5	9,128	28.8	19,181	60.5
6 ~ 9	4,990	15.8	24,171	76.3
10 ~ 19	4,587	14.5	28,758	90.7
20 ~ 29	1,637	5.2	30,395	95.9
30 ~ 49	1,297	4.1	31,692	100.0

<부표 3 - 23> C30 자동차,트레일러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102	18.3	1,102	18.3
3 ~ 5	1,448	24.1	2,550	42.4
6 ~ 9	1,004	16.7	3,554	59.1
10 ~ 19	1,154	19.2	4,708	78.3
20 ~ 29	616	10.2	5,324	88.5
30 ~ 49	689	11.5	6,013	100.0

<부표 3 - 24> C31 기타운송장비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322	15.6	322	15.6
3 ~ 5	421	20.4	743	35.9
6 ~ 9	407	19.7	1,150	55.6
10 ~ 19	437	21.1	1,587	76.7
20 ~ 29	220	10.6	1,807	87.3
30 ~ 49	262	12.7	2,069	100.0

<부표 3 - 25> C32 가구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4,828	47.4	4,828	47.4
3 ~ 5	3,070	30.1	7,898	77.5
6 ~ 9	1,100	10.8	8,998	88.3
10 ~ 19	796	7.8	9,794	96.1
20 ~ 29	242	2.4	10,036	98.5
30 ~ 49	151	1.5	10,187	100.0

<부표 3 - 26> C33 기타제품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10,735	66.4	10,735	66.4
3 ~ 5	3,485	21.6	14,220	88.0
6 ~ 9	1,074	6.6	15,294	94.6
10 ~ 19	580	3.6	15,874	98.2
20 ~ 29	178	1.1	16,052	99.3
30 ~ 49	117	0.7	16,169	100.0

<부표 3 - 27> D. 전기·가스·수도사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1	155	21.0	155	21.0
2 ~ 2	133	18.1	288	39.1
3 ~ 3	104	14.1	392	53.2
4 ~ 5	177	24.0	569	77.2
6 ~ 7	87	11.8	656	89.0
8 ~ 9	81	11.0	737	100.0

<부표 3 - 28> E. 하수·폐기물처리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33	0.9	33	0.9
1 ~ 1	723	19.6	756	20.5
2 ~ 2	674	18.3	1,430	38.7
3 ~ 3	560	15.2	1,990	53.9
4 ~ 5	805	21.8	2,795	75.7
6 ~ 7	525	14.2	3,320	89.9
8 ~ 9	374	10.1	3,694	100.0

<부표 3 - 29> F. 건설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1 ~ 2	38,541	41.4	38,541	41.4
3 ~ 5	21,599	23.2	60,140	64.5
6 ~ 9	12,828	13.8	72,968	78.3
10 ~ 19	12,091	13.0	85,059	91.3
20 ~ 29	4,531	4.9	89,590	96.1
30 ~ 49	3,626	3.9	93,216	100.0

<부표 3 - 30> G. 도·소매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36,168	27.4	236,168	27.4
1~1	423,919	49.2	660,087	76.7
2~2	99,050	11.5	759,137	88.2
3~3	46,557	5.4	805,694	93.6
4~5	35,496	4.1	841,190	97.7
6~7	13,266	1.5	854,456	99.2
8~9	6,730	0.8	861,186	100.0

<부표 3 - 31> H. 운수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440	0.7	2,440	0.7
1~2	322,295	93.6	324,735	94.3
3~5	9,077	2.6	333,812	96.9
6~9	3,845	1.1	337,657	98.0
10~19	3,786	1.1	341,443	99.1
20~29	1,531	0.4	342,974	99.6
30~49	1,518	0.4	344,492	100.0

<부표 3 - 32> I.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60,750	41.3	260,750	41.3
1~1	287,598	45.6	548,348	86.9
2~2	50,590	8.0	598,938	94.9
3~3	16,898	2.7	615,836	97.6
4~5	10,136	1.6	625,972	99.2
6~7	3,389	0.5	629,361	99.7
8~9	1,610	0.3	630,971	100.0

<부표 3 - 33> J. 출판·영상·정보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1,290	5.1	1,290	5.1
1~2	10,497	41.7	11,787	46.9
3~5	5,620	22.4	17,407	69.2
6~9	2,925	11.6	20,332	80.8
10~19	2,759	11.0	23,091	91.8
20~29	1,144	4.6	24,235	96.4
30~49	916	3.6	25,151	100.0

<부표 3 - 34> K. 금융·보험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161	6.6	2,161	6.6
1~1	7,962	24.4	10,123	31.0
2~2	4,247	13.0	14,370	44.0
3~3	3,854	11.8	18,224	55.8
4~5	7,091	21.7	25,315	77.5
6~7	4,802	14.7	30,117	92.2
8~9	2,545	7.8	32,662	100.0

<부표 3 - 35> L. 부동산·임대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7,763	22.9	27,763	22.9
1~1	60,178	49.6	87,941	72.5
2~2	12,487	10.3	100,428	82.8
3~3	7,508	6.2	107,936	89.0
4~5	7,317	6.0	115,253	95.0
6~7	3,956	3.3	119,209	98.3
8~9	2,116	1.7	121,325	100.0

<부표 3 - 36> M. 전문·과학·기술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3,599	5.2	3,599	5.2
1~2	38,965	56.3	42,564	61.5
3~5	15,361	22.2	57,925	83.7
6~9	4,731	6.8	62,656	90.5
10~19	4,060	5.9	66,716	96.4
20~29	1,362	2.0	68,078	98.4
30~49	1,124	1.6	69,202	100.0

<부표 3 - 37> N. 사업서비스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4,298	12.6	4,298	12.6
1~2	18,129	53.0	22,427	65.6
3~5	4,947	14.5	27,374	80.1
6~9	2,174	6.4	29,548	86.4
10~19	2,413	7.1	31,961	93.5
20~29	1,117	3.3	33,078	96.7
30~49	1,119	3.3	34,197	100.0

<부표 3 - 38> O. 교육서비스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70,278	45.2	70,278	45.2
1~1	51,209	32.9	121,487	78.1
2~2	15,860	10.2	137,347	88.3
3~3	6,593	4.2	143,940	92.5
4~5	5,788	3.7	149,728	96.3
6~7	3,371	2.2	153,099	98.4
8~9	2,448	1.6	155,547	100.0

<부표 3 - 39> P. 보건·사회복지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34,811	32.7	34,811	32.7
1~2	58,386	54.8	93,197	87.4
3~5	8,261	7.8	101,458	95.2
6~9	2,385	2.2	103,843	97.4
10~19	1,703	1.6	105,546	99.0
20~29	601	0.6	106,147	99.6
30~49	470	0.4	106,617	100.0

<부표 3 - 40> Q. 예술·스포츠·여가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24,108	23.8	24,108	23.8
1~1	53,991	53.4	78,099	77.2
2~2	14,315	14.2	92,414	91.4
3~3	4,889	4.8	97,303	96.2
4~5	2,580	2.6	99,883	98.8
6~7	823	0.8	100,706	99.6
8~9	421	0.4	101,127	100.0

<부표 3 - 41> R. 개인서비스업

근로자 수	기업 수	백분율	누적 기업수	누적 백분율
0명이하	134,597	36.3	134,597	36.3
1~1	186,912	50.3	321,509	86.6
2~2	26,048	7.0	347,557	93.6
3~3	10,460	2.8	358,017	96.4
4~5	8,089	2.2	366,106	98.6
6~7	3,291	0.9	369,397	99.5
8~9	1,897	0.5	371,294	100.0

(4) 기타

<부표 4-1> ~~현행~~2014년 업종별 대·중소 기업 범위기준

업종	현행(2014년)
제조업A (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제조업B (12개)	
농·임·어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도매·소매업	
광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건설업	
제조업C (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하수처리·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부동산업·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원

- ※ 제조업A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제조업B :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 제조업C :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부표 4- 2> 현행(2014년) 업종별 소기업 범위기준

업종	현행 기준
제조업A (6개)	50인 미만
제조업B (12개)	50인 미만
농·임·어업	10인 미만
전기·가스·수도사업	10인 미만
도매·소매업	10인 미만
광업	50인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업C (6개)	50인 미만
운수업	50인 미만
하수처리·환경복원업	10인 미만
출판·정보서비스업	50인 미만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인 미만
사업지원 서비스업	50인 미만
과학·기술 서비스업	50인 미만
보건·사회복지사업	50인 미만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10인 미만
숙박·음식점업	10인 미만
금융·보험업	10인 미만
교육 서비스업	10인 미만
부동산업·임대업	10인 미만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2014년)

·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 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함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나.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부표 4- 3> 개편안(2015년) 업종별 대·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기준 (매출액)	업종(2015년)
1,500 억원	제조업A (6개)
1,000 억원	제조업B (12개)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매·소매업
	광업
	건설업
800 억원	제조업C (6개)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정보서비스업
600 억원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400 억원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임대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2015년)

·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 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 양적기준에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 억원 이상인 기업

[부록2] 소기업 관련 국내·외 지원정책

1. 소기업 관련 국내 지원 시책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의 2, 2013)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20% 미만이고,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종 중·소기업의 비율이 30% 이상인 품목을 지정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13.12)
 - '13.11월 현재 인쇄물, 배전반, 전산업무 등 23개 제품군 지정(중소기업청공고 제2013-260호)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2014.6)
- 중소기업 규모별로 입찰 참여 범위 제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 2013)
 - 간판 등 12개 업종이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예) 간판: 소기업원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특례(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①항의2)
 - 특별세액감면(소기업: 10~30% 감면, 중기업 0~15%)
 - 비수도권 공장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면제 등

○ (공제·자금 등)

- 노란우산 공제('07년~), 소상공인 자금('14년 6,150억원), 소상공인경영학교, 소상공인 컨설팅 등

2. 주요국 소기업 지원 시책

(1) 미국³⁾

2.1 소상공인투자프로그램 (PRIME : Program for Investment in Micro-Entrepreneurs)

○ 소상공인투자프로그램 사업 목적

- 소상공인투자프로그램이란 중소기업청(SBA) 혹은 기타 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구에 1) 훈련 및 기술적 지원 제공 2) 소기업 자체 실행 능력 제고 3)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개발 및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모범 사례'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각 용어의 정의

-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가 또는 소상공인이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유주, 과반수 소유주, 개발자 등을 의미

(1) 저소득층(low-income person)

(2) 극빈소득층(A very low-income person)

(3)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적정량의 자본이 부족하거나 본 항목에서 설명하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가

3)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3 Business Credit and Assistance, January 2012 ", p226 PART 119

-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란, 미국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섹션 7(j) 혹은 섹션 8(a)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들과는 다르게, 자유기업제도 하에서 소규모 자본 및 신용 기회로 경쟁력이 손상되어 지원혜택을 누릴 수 없는 소유주, 과반수 소유주, 소상공인 설립자 등을 의미
- 대형 소상공인 발전 기구 혹은 프로그램이란 중소기업청(SBA) 이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PRIME) 지원을 요청하는 시점에 (전무 이사 포함) 1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개발 기구를 의미
- 현지 커뮤니티란 모일 수 있는 지역 및 인구로 구성된 주(state)의 정치적 하위 단위임
- 저소득층이란 가족단위 수입금 기준이 아래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
 - (1) 대도시권의 경우, 대도시권 수입의 중간값의 80%
 - (2) 비대도시권의 경우, 아래 기준 이하
 - (i) 비대도시권 중간 임금값의 80% 혹은
 - (ii) 주 전체 비대도시권의 중간 임금 값의 80% 구성
- 소상공인이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독자 소유주, 합작회사, 법인을 의미
 - (1) 소유주를 포함한 고용인 5인 이하; 또한
 - (2) 전통적인 대출, 자본, 타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업체
- 소상공인 개발 기구 및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의미
 - 프로그램 종류로는 지역사회 개발기업 혹은 타 비영리 개발

- 조직 및 어려운 소상공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조직 등이 있음
- 자격을 갖춘 조직이란 119.3 에 규명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 개발 기구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조직을 의미
- 연구 및 개발 보조금 지원이란 119.4(c) 에 의해 받게 되는 보조금임
 - 매칭펀드(Matching fund) 자원의 극심한 제약이란 PRIME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기구의 매칭펀드 및 지원시점 이전 2 년 동안 연방 이외 지원 기관으로부터 유사 자원 조달 능력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판명되었음을 의미
 - 이는 자금 혹은 연방 이외 지원 기관으로부터 유사 자원 부족의 심화현상에서 기인
- 소상공인 개발 기구 및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SBA) 에 소상공인투자프로그램(PRIME)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규직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근무자 수가 (전무이사 포함) 10 인 이하를 기구를 대상으로 함
 - 기술지원보조금이란 119.4(a) 에서 규명된 바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을 의미
- 훈련 및 기술지원이란 어려운 기업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을 의미
 -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플래닝, 마케팅, 경영 재무관리 기술 운영관리, 대출 및 각종 재무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높이기 위한 것을 의미
- 극빈자란, 42 U.S.C. 9902(2),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Act의 section 673(2)와 같이 '가족부양을 위한 임금기준으로 보았을 때 빈곤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의되며 본 섹션에서 요구되는 개편에 포함

-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 보조금 수여자격 조직
 - 소상공인투자프로그램 수여자격이 되는 조직은 아래와 같음
 - (a) 119.2(q)에 정의된 소상공인 개발 기구 및 프로그램(그룹 혹은 공동 기준)과 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있는 경우
 - (b) 119.2(l)에 정의된 중개기관
 - (c) 119.2(q)에 정의된 소상공인 개발 조직 및 프로그램처럼 지역 커뮤니티에 준하며 주(State), 현지 정부, 인디언 부족과 함께 합작 중인 경우
 - (d) 인디언 부족 중 (a),(b),(c) 문단에 나열된 어떠한 사설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사법 권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부족

-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 보조금 지원대상 서비스 및 사업 목적
 -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 수령인(피수여자)는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PRIME)을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함
 - (a)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훈련 및 기술적 지원 제공 (기술지원 보조금)
 - (b) 소상공인 개발 기구나 프로그램에 훈련 및 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훈련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 (능력 개발 보조금)
 - (c) 소상공인 개발 분야의 모범사례 개발 및 연구 보조 (연구 및 개발 보조금)
 - (d) 본 법령(Act)의 의도에 부합하려는 의도를 관리자 및 피지명자에 의한 기타 활동 (자유재량 보조금)
- 소상공인 투자프로그램 방법
 - (a) 본 항목(part) 보조금의 최소 50%는 (인디안 보호구역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최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갖춘 조직에 수여됨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SBA)은 다음 조직들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에게 기회를 부여
 - 대형·소형 소상공인 개발 기구/ 도심·지방·인디안 지원 기구
 - (b) 중소기업청(SBA)은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할당
 - (1) 기술지원 보조금으로 최소 75% 보조
 - (2) 능력개발보조금으로 최소 15% 보조
 - (3) 나머지 10%는 중소기업청(SBA)에 의해 할당되며, 단독 자유재량권은 아래 사항에 사용됨
 - (i) 연구 및 개발 보조금 혹은
 - (ii) 자유 재량 보조금

○ 보조금의 최소·최대 한도

- (a) 기술적 지원 및 능력개발 보조금의 최소 수여액은 첫째 기준 \$50,000이며 자금 상황에 영향을 받음
- (b) 연구 및 개발 혹은 자유재량 보조금에 최소 보조금의 제한은 없음
- (c) 수령인이 단수/복수로 수여받는 보조금은 회계연도기준 \$250,000 또는 당해 사용 가능한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

(2). 유럽연합(EU)⁴⁾

3.1 영국

- 지역개발금융기구(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 영국도 유럽 기타 지역과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회사에 대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개발금융기구(CDFI :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는 주변 국가의 소액 금융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큼
 - 영국에서 자금조달은 소액금융 및 사업설립 지원에 한정되어있지 않으며, 비고용 여성 기업가, 문화적 창의적 기업, 소외지역 신설 기업, 사회적 조직 등과 같은 니치(Niche) 시장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 몇몇 기관들은 소액금융 대출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 소외 계층을 위해 광범위한 제품들을 제공하려 노력

4) Barcelon activa, "Study on Microenterprise Financing and Development", May 2007

3.2 프랑스

3.2.1 Adie

- Adie는 소액신용 메커니즘을 자국 시스템에 처음 도입하였던 Maria Nowak에 의해 1988년에 설립
 - 협회로써 Adie는 국가와 유럽전체의 차원에서 소액신용의 법적·규제적 체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Adie는 소상공인 설립도 지원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용 창출에도 기여
- The good practice (모범사례)
 - Adie의 미션은 '사업을 설립하고 싶으나 전통적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실업자'에게 융자 및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임
 - Adie는 은행신용에 접근권한이 없는 기업가(대부분 실업자 혹은 국가지원 대상자)에게 융자 및 자문을 제공하며, 또한 Adie는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융자를 제공
 - 신규 사업 설립을 위한 연대대출 (최대 €5,000, 최대 2년, 2007년 1월 1일부터 이자율 7.3% 적용)은 경제 활동을 시작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본 대출이 전체 대출 자금의 70%를 구성하고 있음
- 개발대출금은 사업 영위 중인 사업체에게 Adie로부터 자금융자를 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 기업들에게 제공됨
- 할당된 금액 합계는 각각 1,000 유로, 2,000 유로, 3,500 유로, 5,000 유로이며, 이전 대출금 상환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규모의 대출이 연속적으로 제공됨
- Adie 대출제도를 보완해주는 타 유형의 자금 융자들이 있음. 이들 대부분 Adie와 같은 기구의 도움을 받는 주 정부(honour loan, Eden 보조금, 대출 보조금 및 선불, 회사설립용 대출)에 의해 제공됨
-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대출도 시행하고 있음
- 현물 출자도 일부 시행

3.2.2 France Active : 비즈니스 활동 보증인으로써 은행 대출 보증

- France Active 협회는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재단, 사업설립을 위한 공기관, 은행 협동, MACIF 재단 및 여러 자선 기구의 후원 아래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France Active의 미션은 구성 협회 또는 특권을 가진 파트너(기관, 경제통합 참가자, 은행 재단)와 중재하는 협회에 의해 결정
- 모범 사례
 - France Active는 창립 이래로 노동시장에서 자기사업 설립을 할 수 없는 집단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융자 도구(tool)들을 개발하였음
 - 본 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낫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규 서비스 개발과 관련 협회 및 회사들을 지원
 - France Active의 목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극빈자들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금융 도구 활용으로 극빈자들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 France Active에 의해 지원받은 5개의 도구(개개인의 재정적 필요에 맞춘)와 기구가 있음
 - 전문 임시고용 보증기관 Garantie
 - France Active 투자 회사 (SIFA, Societe d'Investissement France Active)
 - 연합 기부금 계약 (CAA from the French)
 -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펀드 (FCP IE, Fonds Commun de Placement Insertion Emplois)
 - 지속적 개발을 위해 France Active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을 제공하고 있음
 - 1991년 창립된 France Active 투자 회사(SIFA)는 운영 중이거나 회사

설립 중인 회사 및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 투자회사로 연대 대출
혹은 당좌예금을 통해 파트너로써 지원

- 예금공탁금고의 도움으로 1999년에 실시된 연합기부금 계약(CAA)은 1901년 법에 의해 지역활동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용 병합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같은 경제활동 등을 통해 일자리 통합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 제공되고 있음
- 1994년 다양한 연합 기구의 도움으로 개발된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펀드는 그 이중적 성격으로 차별성을 지님
- 본 펀드는 사회적인 성격과 연대 펀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추심액의 90%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사회적 투자를 위한 Vigeo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되며, 나머지 10%는 상장되지 않은 증권에 투자됨
- France Active은 추심액의 10%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재결합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협회에 의한 투자를 권고함

3.3 Firmenhilfe hotline - 독일

- 신규 사업들의 대출상환 실패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 서비스 제공
- EVERS & JUNG은 금융 분야의 서비스와 자문을 모두 제공
 - 상업은행, 특히 은행 상품 및 자문에 집중
 - 소액신용은 EVERS & JUNG 신용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임
 - 소액신용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는 질문 분야에서 독일 기구는 KfW Bankengruppe, 독일정부 소액금융기구와 제휴
 - 그들은 소액금융 분야의 국제적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독일과 유럽의 신규 사업 결과 및 성과 향상에 집중
- 모범사례
 - TeleCoaching initiative(유선 자문 및 안내)는 시설립 기업체 혹은 그리고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전화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본 서비스는 현재 지역사회 의회의 지원을 받는 함부르크에서 이용 가능하며 의회의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출 신청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본 기관에서 3개월 마다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 판매, 마케팅 현금흐름 예측 교육
 - 3개월 주기 기업가치평가 기업체 담보 예산 예측 및 예산 유동성
 - 미래 3개월 목표에 관한 상의
 - 기계류 및 상품 구매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제공
 - 정보 전단지 개발
 - 정보 데이터베이스
 - 소규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한 워크숍 훈련
-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체의 대출 상환 실패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
 - 3개월 주기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이 통제 불가능해지기 전에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시기적절하게 규명하기 위함임

(3) 일본⁵⁾

□ 법률과 관련되는 정책

1. 소규모사업자(이하 소기업)⁶⁾ 지원촉진법 (小規模事業者 支援促進法)

(1) 경영개선보급사업

- ① 지도·상담 : 경영 지도자등이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 문제점이나 회계(book-keeping) 관련 지도·상담을 제공함
- ② 경영·기술 강화지원 사업(エキスパート・バンク) : 상공회 등이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보유자(전문가)를 파견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도를 시행함
- ③ 지역 진흥 추진사업 : 상공회가 지역 내 소기업과 함께하는 지역진흥비전, 생산품 개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함
- ④ 미숙련 후계자 육성사업 : 상공회연합회 및 상공회의소에서 청년부, 여성부 자문향상 연수사업 및 소기업 진흥을 위한 기업가 육성 지원 사업과 지역 진흥지원 사업을 시행함
- ⑤ 광역 연계 대책사업 : 상공회가 합병환경 정비를 위해 회관 수리, 홍보 사업을 시행함

5) 中小企業廳, "小規模企業施策体系図"

6) 정의 : 일본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小規模企業(소규모기업)이란 종업원수가 상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5인 이하, 제조업 및 기타업종의 경우 20인 이하로 정의되는데 이는 한국 소기업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됨(* 이하 소기업)

(2) 전국단위사업 (국가가 상공회 · 전국 상공연합회에 예산보조)

① Japan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0년도 예산 : 11.8억엔)

- 상공회 등에서 소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진행, 해외 마케팅에도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 파워 확립 사업 시행함

② 창업인재육성사업 (20년도 예산 : 13.3억엔)

- 상공회 등이 창업을 목표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창업회를 개최함. 또한 신규사업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영자 및 미숙련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교육을 시행함

③ 소기업 신규사업 전국개발 지원사업 (20년도 예산 : 24.6억엔)

- 상공회가 소기업과 함께 지역자원을 살린 특산품개발 및 그 판매경로 개척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함

(3) 기반시설사업(국가가 상공회의소·전국상공회연합이 조성한 채무보증기금을 보조)

- 상공회 등이 소기업을 위한 공동공장, 다목적 플랫폼 등의 시설을 설치함
- 동시에 상공회 등의 자금조달을 원만히 하기 위해 전국연합 및 일본 상공회에 채무보증을 시행함

2. 소기업 시설 도입자금조성법

-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소기업의 설비도입을 위한 자금대부 및 설비대차(할부판매·리스)를 시행함

3. 소기업 공제법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독립법인)이 소기업 업력, 임원들의 퇴직과 관련된 공제사업 및 계약자대부사업을 시행함 (국가출자금 155억엔(18년 예산), 운영비교부금 4억엔(20년))

☐ 금융과 관련되는 정책

1. 융자

- 소기업 경영개선 자금 융자(マル経 : 마루케이) 제도 : 소기업자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상공회 추천으로 1,000만엔까지 국민생활금융공고로부터 무담보·무보증인·저리로 융자함 (마루케이 보조금 36억엔 (20년도 예산))

2. 신용보완

- 특별 소액 보증 등, 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 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이나 담보인을 불필요로 하는 보증제도. 또, 신용 보증료 등을 감액한 자치제의 제도융자

☐ 기본적인 법률

1. 중소기업기본법 - 소기업에 대한 배려 (제8조)

- 국가는 경영자원 확보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기업 경영발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금융, 세제 등 기타 항목에 대하여 소기업 경영상황에 어려움을 제거해 줄 것

2. 중소기업지원법

- 국가는 중소기업지원계획을 책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독립법인)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지

원사업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원확보를 지원함

[부록3]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비교연표

<표 5- 1>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비교 연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설]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 ☐ 업종 및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운송업 : 50 인 이하 ○ 건설업 : 30인 이하 ○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도 •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 10 인 이하	1995	
[신설]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 업종 및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 5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10인 미만	2000	[신설]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 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2001	☐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中 여객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업종 및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운수업 → 운송업, 건설업 : 5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10인 미만	2002	
	2003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 -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 (유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등 추가) - 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중계유선방송업 등 추가) · 의료업 (개인의원 제외)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2006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 토양정화업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업종 및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 50인 → 5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10인 → 10명 미만	2007	
	2008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노처리, 토양정화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2009.02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

		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 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 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 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 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 시, 분뇨처리, 토양정화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 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 물 작성업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 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 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 시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 기업 적용 배제
	2009 .04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 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 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 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 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 토양정화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소기업 졸업기준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상시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010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 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 토양정화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연구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 소기업 졸업기준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상시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 업종 및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2011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10명 미만		
	2014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 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탁 생산업, 전기통신업,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의료업, 관광사업,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 토양정화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종업원 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 산업, 운수업 중 주로 여객 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소기업 졸업기준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상 시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 기업 적용 배제
--	--	---

기초자료 : 법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표 5- 2> 중소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범위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업 종 별 기 준	업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명 미만	(작물재배, 어업, 축산) 50명 미만
	B 광업	50명 미만	50명 미만
	C 제조업	50명 미만	100명 미만
	D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미만	-
	E 하수·폐기물 처리업	10명 미만	10명 미만
	F 건설업	50명 미만	50명 미만
	G 도·소매업	10명 미만	10명 미만
	H 운수업	50명 미만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I 숙박·음식점업	10명 미만	10명 미만
	J 출판·영상·정보	50명 미만	(출판업) 50명 미만
	K 금융·보험업	10명 미만	-
	L 부동산·임대업	10명 미만	-
	M 전문·과학·기술	50명 미만	10명 미만
	N 사업서비스업	50명 미만	10명 미만
	P 교육서비스업	10명 미만	10명 미만
	Q 보건·사회복지	50명 미만	10명 미만
	R 예술·스포츠·여가	10명 미만	10명 미만
	S 개인서비스업	10명 미만	10명 미만
상한기준		없음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조특법상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대홍, “미국의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정책”,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대홍, “미국의 정부관련 사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대금지급법안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신속자금법과 제안서 1216 소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

박기령, “미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미국의 중소기업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심재한, “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 유럽법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 법학논총』 제19집 제1호, 2012

이주윤, "EU의 중소기업의 육성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지민, "미국의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에 관하여",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

표한형·홍성철, 『중소기업 범위 재검토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원, 2013.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해외자료]

Rana Dababneh and Farah Tukan, "Booklet of standardiz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finition", USAID, 2007

Mutsa Chironga et al.,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emerging markets: how banks can grasp a \$350
billion opportunity", McKinsey&Company, 2012

CSES (Centre for Strategy & Evaluation Services), "Evaluation of
the SME Definition", The European Commission, 2012

Khrystyna Kushnir et 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 Count?", World Bank IFC, 2010

ACCA(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0억 이하 : a global agenda", 2010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verview of Participation in U.S.
Exports", 2010

Vaselin Kuntchev et al.,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Enterprise Surveys Regarding Access to Credit by SMEs?",
The World Bank Financial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13

Jan de Kok, et al., "Is Small Still Beautiful? : Literature Review of
Rec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Contribution of SMEs to
Employment Cre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13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SIZE STANDARDS
METHODOLOGY", 2009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 2013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ules and Regulation",
Federal Register Vol. 77, No. 235, 2012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ules and Regulation",
Federal Register Vol. 77, No. 24, 2012

USA. GOV., Small Business Act of 2008, Pub. L. 110-246 § 7. (j) - § 8. (a)

USA. GOV., Small Business Act of 2013, Pub. L. 112-239

USA. GOV., CFR-2012 Title 13 Business Credit and Assistance
revised as of 2012

USA. GOV.,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USA. GOV.,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Pub. L. 111-240--SEPT.
27, 2010

Barcelona activa, "Study on Microenterprsie Financing and
Development : Good Practicie in Europe", 2007

Helmut Kraemer-Eis Alessio Conforti, "Microfinance in
Europe : A market overview", European Investment Fund, 2009

Birthe Bruhn-Leon, Per-Erik Eriksson, Helmut Kraemer-Eis,
"Progress for Microfinance in Europe", European Investment Fund, 2012

Association for Enterprise Opportunity, "Introduction to
Starting and Sustaining a Micro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 2003

European Commission, Methology of Forcasts_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1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concerning the new SME definition _ User guide and model
declaration, 2003

European Commission, How to support SME Policy from Structural Funds _ Building Entrepreneurial Mindsets and skills in the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2

European Commission, How to support SME Policy from Structural Funds _ Using standards to support growth,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2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Commission follow-up to the "TOP TEN" Consultation of SMEs on EU Regul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3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communication Model declaration on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 of an enterprise as an SM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3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Commission, 2008

中小企業廳, 「中小企業基本法」, 2013

_____, 「中小企業白書」, 2014

_____, 「中小企業支援體系圖」, 2013

_____,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案」 2014

_____, 「商工會及び商工會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小規模支援法】の小規模支援法案」, 2014

기본연구 14-01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

발 행 인	김 세 종
발 행 처	중소기업연구원 121-904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0층, 11층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출판등록	제318-2005-00015호

본서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함

ISBN 978-89-6179-237-0 93320

비매품